
이란 경제 제재에 따른 한국농식품 수출 영향 분석

두바이지사

2019년 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한국농식품 수출 영향 분석[이란]

□ 한·이란 농식품 수출 현황

(1) 제재복원 전후 한-이란 농식품 주요 수출 품목

제재기간 전(2017년 8월~2018년 8월)		1차 제재복원(2018년 8월~10월)	2차 제재복원(2018년 11월~2019년 1월)
(중량별)	- 보조사료(기타) ▲ 16%	- 백삼조제품인삼차 이외 기타 - 조제품 기타 - 글리세롤조상의 것 -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 에폭시화한 대두 - 조제품 기타 - 효소 기타(기타) - 무종자 - 상찬용 웨이퍼, 실링웨이퍼 등(기타)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리스페이퍼 외 기타	-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 기타(채소)종자 -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 - 조제품 기타 - 양배추 종자 - 상찬용 웨이퍼, 실링웨이퍼 등(기타)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리스페이퍼 외 기타
	- 팜유, 분획물(수소 첨가) ▲ 38%		
(금액별)	- 에폭시화한 대두 ▲ 31%		
- 기타(채소)종자 ▲ 11%			
- 에폭시화한 대두 ▲ 47%			
- 식물성액즙과액(식)기타 ▲ 134%			
- 보조사료(기타) ▲ 369%			
- 토마토 종자 ▲ 5%			
- 효소 기타(기타) ▲ 104%			

□ 미국 對이란 제재 개요

○ (요약) ' 18.5.8 美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이하 JCPOA) 파기 선언과 함께 美 재무부는 이란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복원기로 결정

(1) 미국의 對이란 제재 주요 내용

1차 제재(2018년 8월 7일)	2차 제재(2018년 11월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제한 - 이란 정부와 달러화 거래 금지 - 이란 리알화 거래 제외 - 국외 이란 계좌 동결 ▶ 무역 금지 품목 - 금, 귀금속, 알루미늄, 철강, 흑연, 석탄 - 자동차, 상용기, 항공기 부품 - 피스타치오, 캐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및 투자 제한 - 보험계약 인수 금지 - 이란 에너지 산업 투자 및 거래 금지 - 이란 중앙은행, 기타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 중단 ▶ 무역 금지 품목 - 원유, 석유가스, 석유제품, 해운, 조선

이란 인도주의 무역관련 금융채널에 대한 실사보고(2019년 10월 25일)

- 미국 정부는 이란 정권이 제재를 피하고 악의적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위 인도 주의적 무역을 이용하는 등 국제 사회의 선의를 지속 남용한다고 판단
- 이에 인도주의적 거래의 중심이 이란 중앙은행(CBI)과의 거래를 제한함
- 행정 명령 13224에 따라, 정부와 금융 기관이 CBI와의 거래에 참여하면 테러 지원에 연루될 수 있음을 경고

□ 제재에 따른 對이란 주요국 입장

* 조사대상국 : EU, 터키, 카타르, 쿠웨이트,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정부입장	이란 제재 지지	중립 혹은 공식입장 없음	이란 제재 반대
	EU,일본,대만,싱가포르	(중립)카타르,인도,파키스탄 (의견 없음)쿠웨이트,러시아,중국	터키

□ 제재에 따른 對이란 수출품목

○ 對이란 수출 가능 및 불가능품목('19년 9월20일 부로 인도적 차원의 물품도 수출금지 조치됨)

이란 수출 가능품목(2차 제재까지 유효, 현재 불가)	이란 수출 불가능품목
식품의 정의, 영양을 제공하는 목적의 제품으로 인간 또는 동물용 비타민 및 미네랄, 식품 첨가물,보충제 및 병에 든 물과 씨앗으로 발아 소비되는 품목.인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 (단,주류, 담배,껌 또는 비료는 미포함)	피마자 콩, 피마자 콩 씨앗, 날달걀, 수정란 (물고기 이외)새우알, 건란 알부민, 생동물, 목주, 정품 완두콩, 젤라틴 분말 및 펩톤 및 그에 따른 유도체 일체

*출처: 31 CFR 538 및 560 법규

□ 시사점

'18,'19년 제재 특징	현지 바이어 인터뷰(타국의 對이란 거래)	對이란 비즈니스 유의사항
- '12년 제재 이후 복원된 '18~'19년은 미 단독제재임에도 불구하고,제재강도가 강력 - 육해상운송통관검사 및 금융거래모니터링에 대한 이례적인 제재 강화	- (소형목선거래) 제재 품목이지만 자동차 부품은 이란 내에서 수요가 상응하여 소형 목선을 통해 교역 진행 중 - 건강기능식품,식료품을 이란 해상 혹은 인접국과의 해상경계에서 거래하고 있음 - (우회항로이용) 상대적으로 경계가 느슨한 요만 혹은 아라크를 통해 식품을 들여오고 있음 - 중국,터키와 식품거래시 별도의 SWIFT CODE가 필요하지 않아 거래하고 있음	- '19년 10월 25일, 미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는 완전 잠재적 테러지원에 연루될 수 있음을 경고 - 우회경로,해상거래 등 이란과 교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되지 않음. 또한,이 란 자국 내의 제도 변경이 빈번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이란 거래는 지중할 필요성 있음

향후 이란 수출전망 및 시사점

- 근 시일내, 이란 원유수입 예외국 재인정받는다 해도 제재 품목은 거래불가, 인도주의적 제품만 일시적 거래가능 예상함 이를 대비해, 최소한 제재 비대상 품목들에 대한 교역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기업 입장에서는 추후 재개가능성을 염두하고 비즈니스 행사 및 개별출장을 통해 바이어와의 지속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필요

제 1 장 한·이란 농식품 수출 현황

1-1) 2018년 이란 전체 무역현황

<2018년 이란 전체 수출입현황>

(단위: 천불,%)

순위	구 분	수 출		구 분	수 입	
		금액 ¹⁾	구성비		금액 ²⁾	구성비
무역총계		27,121,136/ 41,236,168	65.7/100		86,191,107/ 96,617,521	89.1/100
1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7,686,643	18.6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66,366,802	68.7
2	곡물	4,350,129	10.5	플라스틱과 그 제품	5,551,469	5.7
3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3,658,308	8.9	유기화합품	4,105,898	4.2
4	의료용품	2,730,360	6.6	철강	3,905,528	4.0
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1,577,328	3.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1,718,813	1.8
6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531,118	3.7	광(鑛)·슬래그(slag)·회(灰)	1,138,483	1.2
7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511,493	3.7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1,074,662	1.1
8	유기화합품	1,406,191	3.4	비료	843,714	0.9
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385,798	3.4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785,180	0.8
10	철강	1,283,768	3.1	구리와 그 제품	700,558	0.7

* 출처 :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 2018년 이란 對글로벌 전체 수출액은 412억 불, 수입액은 966억 불을 기록함
 - 전체 수출품목 10순위 기준, 곡물은 2위,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이 6위를 차지함
 - 전체 수입품목 10순위 기준,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이 5위,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이 7위를 차지함

1) 이란 전체 수출금액 10순위 합으로 무역총계액 합과 상이함
 2) 이란 전체 수입금액 10순위 합으로 무역총계액 합과 상이함

1-2) 2018년 한국 對이란 수출입현황

<2018년 한국 對 이란 전체 수출입현황>

(단위: 천불,%)

순위	수출		수입	
	구분	금액	구분	금액
무역총계		2,294,259		4,091,022
1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521,877	광물성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3,930,806
2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409,762	구리와 그 제품	30,635
3	플라스틱과 그 제품	343,489	비료	26,833
4	철강	206,465	납과 그 제품	20,135
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161,144	광(鑛)·슬래그(slag)·회(灰)	19,808
6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량기·검사기·정밀기·의료용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44,909	철강	14,485
7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111,556	알루미늄과 그 제품	12,968
8	유기화학품	70,040	아연과 그 제품	12,874
9	철강의 제품	62,569	플라스틱과 그 제품	5,173
10	고무와 그 제품	55,437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3,686
11	의료용품	31,687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3,368
12	인조스테이플섬유	19,966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163
13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17,289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1,476
14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16,12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1,106
15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15,858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892
...				
19	어류	8,381		
29	동식물성 유지	2,569		
30	음료, 주류	2,538		
37	기타식료품	987		
39	식물성엑스	742		
40	종자, 한약재	602		
41	조제사료	567		
54	당류	193		
59	곡물조제품	35		

* 출처 :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 2018년 한국 對 이란 수출액은 22억 9천만 불, 수입액은 40억 9천만 불을 기록함
 - 對이란 수출품목 중 농수산물식품은 30위권 내에 어류(19위, 838만불), 동식물성 유지(29위, 256만불), 음료, 주류(30위, 253만불) 등을 기록했으며, 그 밖에 기타식료품(37위, 98만불), 식물성엑스(39위, 74만불), 종자, 한약재(40위, 60만불), 조제사료(41위, 56만불), 당류(54위, 19만불), 곡물조제품(59위, 3만불) 순으로 수출액을 달성함

1-3) 2018년 이란 對 글로벌 주요 농축산물 수출입현황

<2018년 이란 주요 농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천불,톤)

순위	수출품목	수출액	수출량	수입품목	수입액	수입량
1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44,311	178,578	쌀_정미	1,622,116	1,607,173
2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8,968	26,398	쌀_현미	6,384	7,969
3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8,434	6,288	스위드(swede) · 멥골드(mangold) · 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 건조 루우산(lucerne)(알팔파) · 클로버(clover) · 샌포인(sainfoin) · 사료용 케일(kale) · 루핀(lupine) · 베티(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 기타	3,046	10,391
4	스위드(swede) · 멥골드(mangold) · 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 건조 루우산(lucerne)(알팔파) · 클로버(clover) · 샌포인(sainfoin) · 사료용 케일(kale) · 루핀(lupine) · 베티(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4,628	17,074	건조한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 · 뿌리나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물품의 고운가루 · 거친가루 · 가루_(C)제8류해당물품의 고운가루 · 거친가루 · 가루 ³⁾	1,614	209
5	곡물의 부순 알곡 · 거친 가루 · 펠릿(pellet)_옥수수로 만든 것	3,809	15,893	맥아_볶지 않은 것	1,211	2,079
6	쌀_정미	3,516	1,970	맥아_볶은 것	1,012	1,546
7	건조한 채소 양파, 버섯,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송로(松露)	1,214	2,832	감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276	219
8	감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408	222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진주 모양인 것 ·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잘게 부순 것 옥수수로 만든 것	237	52
9	냉동 과일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_초본류 딸기	397	265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진주 모양인 것 ·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잘게 부순 것 귀리로 만든 것	71	123
10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기타	147	46	쌀_쇄미(broken rice)	22	50

* 출처 :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 2018년 이란 주요 수입 농산물로는 쌀(정미, 현미), 스위트(swede) · 멥골드(mangold) · 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 건조 루우산(lucerne)(알팔파) · 클로버(clover) · 샌포인(sainfoin) · 사료용 케일(kale) · 루핀(lupine) · 베티(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_기타, 건조한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 · 뿌리나괴경(塊莖), 맥아_볶지 않은 것 등이 있음
 - 쌀(정미, 현미)은 약 16억 2,850만 불(수입량 약 160만 톤)로 1위를 차지함
 - 수입품목은 주로 곡물(정미, 현미, 쇄미), 뿌리채소류, 채두류, 곡물가공류로 확인됨

3) 고운가루 · 거친가루 · 가루를 만드는데 쓰이는 주요한 과일과 견과류에는 밤 · 아몬드 · 대추 · 야자 · 바나나 · 코코넛과 타마린드열매 등. 또한 이 호에는 과일 껍질의 고운가루 · 거친가루 · 가루도 분류함. 그러나 이 호에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된 타마린드가루(tamarind powder)는 제외함(제3004호). 이 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산화방지제(anti-oxidants)나 유화제(emulsifiers)를 첨가하여 개량할 수 있음.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함

- (a) 사고(sago)야자의 심(pith)(제0714호)
- (b) 타피오카(tapioca)로 알려진 조제 식료품(제1903호)

<2018년 이란 주요 가공식품 수출입 현황>

(단위: 천불,톤)

순위	수출품목	수출액	수출량	수입품목	수입액	수입량
1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_기타	203,202	84,224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651,244	1,429,881
2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_스위트 비스킷	153,276	88,798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_기타	200,435	26,840
3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_기타	141,031	100,634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162,250	24,100
4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138,643	41,804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102,654	281,177
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_기타	126,901	57,395	사료용 조제품_기타	43,337	18,640
6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_감자	123,658	29,675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17,566	4,050
7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_기타	86,128	18,284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_기타	12,383	14,104
8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미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노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멜로니(cam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_기타	66,549	86,04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_복숭아[넥타린(nectarin e)을 포함한다]	9,110	8,950
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_기타	60,151	57,729	그 밖의 당류(糖類) 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 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건조 상태에서 측정된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8,912	5,741
10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_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53,481	13,877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_기타	8,086	4,864

* 출처 :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 2018년 이란 주요 수입 가공식품으로는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 등이 있음
 -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은 약 6억 5천만 불로 1위,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은 약 2억 불로 2위를 기록함

<2018년 이란 주요 동물성생산품4/동식물성 유지 수출입 현황>

(단위: 천불,톤)

순위	수출품목	수출액	수출량	수입품목	수입액	수입량
1	치즈와 커드(curd)_그 밖의 치즈	165,256	49,390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_조유	521,917	641,249
2	밀크와 크림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157,798	54,787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_기타	290,295	428,998
3	버터밀크 ·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 요구르트 · 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 · 과일 · 견과류 · 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_요구르트	97,002	102,772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_버터	212,424	32,596
4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_그 밖의 새우류	95,472	29,720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_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121,923	154,906
5	치즈와 커드(curd)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26,394	9,540	동물성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테르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_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46,961	26,771
6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_기타	24,997	4,638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_기타	15,452	10,566
7	소 · 면양 · 산양의 지방_탈로우(tallow)	14,863	16,822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_버진	12,143	3,278
8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_기타	12,714	7,375	마가린, 동물성 ·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_기타	11,907	7,132
9	대두유와 그 분획물_기타	11,728	7,185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_조유(粗油)	11,689	10,689
10	마가린, 동물성 ·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_마가린(액상제외)	10,792	5,574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_기타	11,299	7,986

* 출처 :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 2018년 이란 주요 수입 동식물성 유지 제품으로는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1위,5억 2천만 불), 팜유와 그 분획물(2위,2억 9천만 불),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3위,2억 1천만 불)등이 기록됨

4) 산동물 포함

1-4) 한-이란 농축산물 교역현황 (2014-2018)

〈2014년-2018년 한-이란 농축산물 교역현황〉

(단위: kg,달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12월)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수 출	농산물	17,645,853.4	28,618,805	14,640,821.6	21,359,479	21,230,814.8	28,085,049	17,895,357.3	28,898,716	14,524,695.8	21,720,531
	축산물	325,841	2,489,905	618,260.1	4,590,011	600,190	4,247,030	560,000	3,373,277	260,100.1	1,636,049
	임산물	1,078,592.2	821,524	89,081.8	137,436	441,625.1	236,759	260,911.8	694,796	2,176,376.8	556,851
	총 합	19,052,300.6	31,930,234	15,350,178.5	26,086,926	22,274,645.9	32,568,838	18,718,286.1	32,966,789	16,963,190.7	23,913,431
수 입	농산물	656,466	2,663,585	745,131	2,247,355	1,180,743	2,840,801	1,662,403.8	3,385,503	1,354,287.2	3,466,322
	축산물	621	24,632	2,861	171,865	25,119.9	194,078	3,611.1	210,345	4,723.4	204,664
	임산물	17,827	571,985	345,917	585,739	562,231.5	867,222	284,240.8	642,673	367,227.9	432,157
	총 합	674,914	3,260,202	1,093,909	3,004,959	1,768,094.4	3,902,101	1,950,255.7	4,238,521	1,726,238.5	4,103,143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수출입통계

- 2018년 對이란 수출액은 수입액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 2018년 한-이란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은 2,391만불로 17년(3,296만불)대비 약 27.5% 감소함
 - 2018년 한-이란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은 4,103만불로 17년(4,238만불)대비 약 3.2% 감소함

〈2014년-2018년 한-이란 농축산물 수출입 물량 증감율〉

(단위: kg,%)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12월)	연평균 증감율		
	물 량							
수 출	농산물	17,645,853.4	14,640,821.6	21,230,814.8	17,895,357.3	14,524,695.8	▼	9.27%
	축산물	325,841	618,260.1	600,190	560,000	260,100.1	▼	10.66%
	임산물	1,078,592.2	89,081.8	441,625.1	260,911.8	2,176,376.8	▲	42.05%
	총 합	19,052,300.6	15,350,178.5	22,274,645.9	18,718,286.1	16,963,190.7	▼	5.64%
수 입	농산물	656,466	745,131	1,180,743	1,662,403.8	1,354,287.2	▲	43.63%
	축산물	621	2,861	25,119.9	3,611.1	4,723.4	▲	175.79%
	임산물	17,827	345,917	562,231.5	284,240.8	367,227.9	▲	353.87%
	총 합	674,914	1,093,909	1,768,094.4	1,950,255.7	1,726,238.5	▲	59.93%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수출입통계

〈2014년-2018년 한-이란 농축산물 수출입 금액 증감율〉

(단위: 달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12월)	연평균 증감율	
		금 액						
수 출	농산물	28,618,805	21,359,479	28,085,049	28,898,716	21,720,531	▼	12.88%
	축산물	2,489,905	4,590,011	4,247,030	3,373,277	1,636,049	▼	18.94%
	임산물	821,524	137,436	236,759	694,796	556,851	▼	17.67%
	총 합	31,930,234	26,086,926	32,568,838	32,966,789	23,913,431	▼	13.46%
수 입	농산물	2,663,585	2,247,355	2,840,801	3,385,503	3,466,322	▲	14.08%
	축산물	24,632	171,865	194,078	210,345	204,664	▲	188.25%
	임산물	571,985	585,739	867,222	642,673	432,157	▼	13.08%
	총 합	3,260,202	3,004,959	3,902,101	4,238,521	4,103,143	▲	12.19%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수출입통계

- 2014년-2018년 한-이란 농축산물은 -13.46% 수출성장률을 기록함
 - 해당기간 내,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은 각각 -12.88%,-18.94%,-17.67%의 두 자릿수로 감소
- 반면,이란산 수입은 임산물(13.08%↓)을 제외한 농산물,축산물 수출은 각각 14.08%,188.25%로 크게 증가함

<2014년-2018년 한국 對이란 주요 농식품 수출입품목 현황>

(단위: 달러,kg)

2014년

순번	수출품목	수출액	수출량	수입품목	수입액	수입량
1	과당시럽 (과당 함유량 50%초과)	6,541,910	3,462,071	무화과(신선, 건조)	213,177	926,754
2	라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⁵⁾	3,723,000.1	6,407,623	커민의 씨(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190,555	770,225
3	프로필렌글리콜	2,924,015	5,648,140	기타 단일의 과일 주스(기타)	166,231	674,238
4	음료(설탕, 감미료 첨가한 물, 인삼음료,과즙이외기타)	1,244,311.2	1,126,670	보조사료(기타)	40,000	165,084
5	표백한 것	1,076,324	805,064	피스타치오(탈각한 것)	17,755	569,419
6	아조디카본아미드	647,000	2,130,536	포도(건조)	17,000	51,371
7	에폭시화한 대두	488,000	757,401	사과주스(기타)	5,400	4,112
8	추잉검(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 불문)	412,138.1	1,500,455	대추야자(신선, 건조)	2,004	5,321
9	젤라틴	310,241	2,459,185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양탄자류, 결절한 것)	412	9,942
10	과실주스 음료	291,916.8	286,610	한약재 (기타/향료, 의약품 등)	409	17,773

2015년

순번	수출품목	수출액	수출량	수입품목	수입액	수입량
1	프로필렌글리콜	2,803,150	4,737,251	커민의 씨(파쇄 및 분쇄하지 아니한 것)	168,000	668,400
2	젤라틴	600,000	4,421,016	무화과(신선, 건조)	163,077	644,207
3	라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2,312,000	3,492,559	피스타치오(탈각한 것)	13,102	457,141
4	음료(설탕, 감미료 첨가한 물, 인삼음료,과즙이외기타)	2,445,732.3	2,199,451	기타 단일의 과일 주스(기타)	116,283	374,974
5	과당시럽(과당 함유량 50% 초과)	4,034,100	2,176,725	과실류(딸기, 감, 대추, 매실 등 이외 기타/신선)	152,072	214,801
6	추잉검(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 불문)	350,603	1,249,857	프로필렌글리콜	86,000	178,546
7	아조디카본아미드	379,750	1,042,638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양탄자류, 결절한 것)	2,857	171,728
8	식물성 점질물 (한천, 로우커스트 점질물 이외 기타)	98,000	1,019,872	석제품기타석비석용 또는 건축용석재와 그제품	329,601	122,889
9	에폭시화한 대두	698,000	909,833	당류(유당, 단풍당, 포도당, 과당, 인조꿀, 캐러멜당, 맥아당 이외 기타)	18,010	41,641
10	과실주스 음료	846,312.9	770,840	살구,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또는자두의핵	6,060	32,092

5) 리신과 그 염, 리신 에스테르와 그 염(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2016년

순 번	수출품목	수출액	수출량	수입품목	수입액	수입량
1	프로필렌글리콜	7,691,879	5,602,900	그 밖의 과실(기타/신선한 것)	696,038	616,960.8
2	라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6,334,879	4,845,000	기타 단일의 과실주스(기타)	504,887	153,436.3
3	과당시럽(과당 함유량 50% 초과)	2,167,565	4,000,000	커민의 씨(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60,640	144,000
4	음료(설탕, 감미료 첨가한 물, 인삼음료,과즙이외기타)	2,635,448	2,143,878.8	무화과(신선, 건조)	644,182	137,980
5	글리세롤	386,950	1,489,860	사과주스(기타)	30,013	37,170
6	에폭시화한 대두	820,848	611,400	전화당과 그 밖의 당류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인 것으로 한정/인조꿀, 캐러멜당, 맥아당 이외 기타)	53,684	30,005.1
7	젤라틴	4,246,490	600,160	살구·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의 핵	155,219	26,852.4
8	과실주스 음료	569,266	550,475.1	대추야자(신선, 건조)	62,375	23,000.4
9	아조디카본아미드	1,248,945	458,500	피스타치오(탈각한 것)	633,949	21,704.3
10	추잉검(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 불문)	1,043,390	316,976.9	한약재(기타/향료, 의약품 등)	103,960	8,063

2017년

순 번	수출품목	수출액	수출량	수입품목	수입액	수입량
1	라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9,349,199	6,834,000	그 밖의 과실기타신선한 것	1,076,875	946,184.6
2	프로필렌글리콜	5,499,265	3,891,500	기타 단일의 과실 주스(기타)	1,004,600	335,645.1
3	젤라틴	3,373,277	560,000	무화과(신선, 건조)	566,632	116,098
4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3,104,259	3,318,303.6	대추야자(신선, 건조)	97,639	71,958.9
5	필터담배	1,835,242	154,211	커민의 씨(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22,039	58,000
6	백삼초제품(인삼차 이외 기타)	1,206,442	36,626	밀의 글루우텐(건조 여부 불문)	66,272	48,000
7	조제품 기타	1,176,648	33,076.1	전화당과 그 밖의 당류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인 것으로 한정인조꿀 캐러멜당 맥아당 이외 기타)	44,630	23,000
8	아조디카본아미드	1,151,485	376,000	사과주스(기타)	13,450	21,060
9	흡연용 담배(기타)	969,185	115,960	피스타치오(탈각한 것)	549,725	16,927.5
10	식물성 점질물(한천 로우커스트 점질물 이외 기타)	895,819	95,500	살구·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의 핵	84,698	14,208

2018년

순번	수출품목	수출액	수출량	수입품목	수입액	수입량
1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2,795,716	1,979,428.8	기타 단일의 과실 주스(기타)	2,144,481	648,638
2	에폭시화한 대두	479,641	335,200	밀의 글루텐(건조 여부 불문)	431,595	288,023
3	조제품 기타	463,791	8,430.6	그 밖의 과실(기타)신선한 것	246,157	186,199
4	기타(채소종자)	431,377	2,565.4	대추야자(신선 건조)	193,299	118,866.2
5	백삼조제품(인삼차 이외 기타)	413,077	11,074.8	무화과(신선 건조)	180,404	39,005.2
6	식물성 점질물(한천 로우카스트 점질물 이외 기타)	328,568	29,200.3	사과주스(기타)	17,741	20,160
7	식물성액즙과액(스기타)	318,905	18,089.1	살구·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의 핵	59,675	18,648.1
8	추잉검(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 불문)	166,410	60,480	식물성액즙과액(스기타)	30,012	10,000.4
9	토마토 종자	96,209	1,065.8	피스타치오(탈각한 것)	267,789	8,003.9
10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	90,721	6,132	기타(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63,831	6,677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수출입통계,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 2014년-2018년 한국 對이란 주요 농식품 수출품목(10순위 이내)은 백삼조제품(인삼차 이외 기타), 조제품 기타, 라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젤라틴, 음료(설탕, 감미료 첨가한 물, 인삼음료, 과즙이외기타), 과당시럽(과당함유량 50% 초과), 프로필렌글리콜(식품첨가물) 등이 주로 거래됨
 - 2018년 對이란 수출품목 중,
 -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1위, 279만 불),
 - 에폭시화 한 대두(2위, 47만 불), 조제품 기타(3위, 46만 불), 기타(채소종자)(4위, 43만 불),
 - 백삼조제품(인삼차 이외 기타)(5위, 41만불) 순으로 수출액 기록
- 2014년-2018년 한국 對이란 주요 농식품 주요 수입품목(10순위 이내)은 대추야자(신선, 건조), 사과주스(기타), 피스타치오(탈각한 것), 커민의 씨(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기타 단일의 과실 주스(기타), 살구·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의 핵 등이 주로 거래됨

1-5) 한-이란 1,2차 제재기간 동안 농식품 수입 추이

a. 1차 제재기간(2018년 8월)이전 한-이란 농식품 수출현황 (중량별 순위)

(단위: kg,%)

순번	수출 품목	2017년 8월	2018년 8월	증감율
1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6,834,000	6,511,000	▼ 5%
2	글리세롤(조상의 것)	3,891,500	2,696,650	▼ 31%
3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3,318,303.6	1,979,428.8	▼ 40%
4	프로필렌글리콜	1,696,350	1,659,970	▼ 2%
5	보조사료(기타)	376,000	436,000	▲ 16%
6	팜유, 분획물(수소 첨가, 인타에스테르화·리에스테르화·엘라이딘화한 것)	314,683	434,000	▲ 38%
7	에폭시화한 대두	256,000	335,200	▲ 31%
8	아조디카본아미드	184,575.9	253,000	▲ 37%
9	추잉껌(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 불문)	154,211	60,480	▼ 61%
10	식물성 점질물(한천, 로우커스트 점질물 이외 기타)	138,000	29,200.3	▼ 79%
11	밀크대용물(함유조제품)	115,960	22,309.5	▼ 81%
12	식물성액즙(과일·채소·기타)	95,500	18,089.1	▼ 81%
13	물(광천수, 탄산수 포함)설탕, 감미료, 향미 첨가	89,448.9	16,500	▼ 82%
14	백삼조제품(인삼차 이외 기타)	81,361.2	11,074.8	▼ 86%
15	상한용 웨이퍼, 살균웨이퍼 등(기타)용에 적합한 반건습 라이스페이퍼(외기타)	76,305.6	9,150	▼ 88%
16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한없다)	50,000	9,089.3	▼ 82%
17	조제품 기타	36,626	8,430.6	▼ 77%
18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	33,854.5	6,132	▼ 82%
19	인삼음료	33,076.1	6,012	▼ 82%
20	물(설탕, 감미료, 향미 첨가)착색한 것	30,000	4,809.6	▼ 84%
21	설탕(과자류, 추잉껌, 감초엑스, 캔디류 이외 기타)	19,800	2,850	▼ 86%
22	기타(채소·종자)	11,530	2,565.4	▼ 78%
23	조제식료품 기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제2401호부터 제2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10,000	2,000	▼ 80%
24	무종자	9,852.8	1,640	▼ 83%
25	조제식료품(기타)	9,540	1,340	▼ 86%
26	아미노산(기타)	6,312	1,200.5	▼ 81%
27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커피,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5,000	1,136.9	▼ 77%
28	토마토 종자	5,000	1,065.8	▼ 79%
29	국수(조제하지 않은 파스타)조리를 넣은것 이외 기타	3,165.8	907	▼ 71%
30	간장(soya sauce)	2,100	845	▼ 60%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수출입통계,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 1차 제재기간(2018년 8월)이전 한-이란 농식품의 중량별 기준은,

- 보조사료(기타)(16%, 43만 6천 톤), 팜유, 분획물(수소첨가, 인타에스테르화·리에스테르화·엘라이딘화한 것)(38%, 43만 4천 톤), 에폭시화한 대두(31%, 33만 5천 톤), 아조디카본아미드(37%, 25만 3천 톤)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함

(금액별 순위)

(단위: 달러,%)

순 번	수출 품목	2017년	2018년	증감율
1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9,349,199	9,423,484	▲ 1%
2	프로필렌글리콜	5,499,265	2,905,232	▼ 47%
3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3,104,259	2,795,716	▼ 10%
4	필터담배	1,835,242	0	▼ 100%
5	백삼조제품인삼차 이외 기타	1,206,442	413,077	▼ 66%
6	조제품 기타	1,176,648	463,791	▼ 61%
7	아조디카본아미드	1,151,485	811,052	▼ 30%
8	흡연용 담배기타	969,185	0	▼ 100%
9	식물성 점질물(한천, 로우카스트 점질물 이외 기타)	895,819	328,568	▼ 63%
10	추잉검(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 불문)	600,204	166,410	▼ 72%
11	글리세롤 조상의 것	497,530	1,184,098	▲ 138%
12	밀크대용물함유조제품	414,989	59,402	▼ 86%
13	기타(채소종자)	389,609	431,377	▲ 11%
14	에폭시화한 대두	325,319	479,641	▲ 47%
15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	291,566	90,721	▼ 69%
16	과실주스 음료	207,664	0	▼ 100%
17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136,345	318,905	▲ 134%
18	옥수수유(조유)	135,597	0	▼ 100%
19	보조사료(기타)	123,504	567,388	▲ 359%
20	토마토 종자	91,759	96,209	▲ 5%
21	양배추 종자	83,652	53,463	▼ 36%
22	프리젤라타나이지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70,950	0	▼ 100%
23	간장(soya sauce)	65,789	784	▼ 99%
24	배합사료 기타	47,094	0	▼ 100%
25	조제식료품 기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46,494	19,109	▼ 59%
26	기타(뉴시용 떡밥 이외 기타)	32,785	0	▼ 100%
27	포도당(과당 함유량 20% 미만)	32,663	0	▼ 100%
28	무종자	23,461	21,135	▼ 10%
29	기타(변성없는 에틸알콜)	23,169	0	▼ 100%
30	효소 기타(기타)	14,450	29,535	▲ 104%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수출입통계,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 1차 제재기간(2018년 8월)이전 한-이란 농식품의 금액별 기준,
 - 라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1%, 940만 불), 글리세롤(138%, 118만불), 기타(채소종자)(11%, 43만 불), 에폭시화한 대두(47%, 47만 불),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134%, 31만 불), 보조사료(기타)(359%, 56만 불), 토마토 종자(5%, 9만 6천 불), 효소 기타(기타)(104%, 2만 9천 불)만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고 기타 품목은 감소함

b. 1차 제재기간(2018년 8월~10월) 한-이란 농식품 수출현황

(단위: 달러)

순번	수출품목	2018년 8월	순번	수출품목	2018년 9월	순번	수출품목	2018년 10월
		무역총계			3,501,541			1,327,456
1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냉동)	2,622,709	1	라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1,116,911	1	라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439,207
2	젤라틴	504,792	2	글리세롤(조상의 것)	83,086	2	백삼조제품(인삼차 이외 기타)	219,829
3	글리세롤(조상의 것)	122,261	3	젤라틴	127,051	3	조제품 기타	68,506
4	라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75,776	4	성찬용 웨이퍼, 실링웨이퍼 등(기타/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라이스페이퍼 외 기타)	337	4	성찬용 웨이퍼, 실링웨이퍼 등(기타/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라이스페이퍼 외 기타)	564
5	에폭시화한 대두	72,092	5	목재 케이스, 상자, 크레이트, 드럼 등	44	-		
6	조제품 기타	55,589	6	기타(기타의 목재가구/기타)	27			
7	효소 기타(기타)	29,535						
8	무종자	17,231						
9	석제품(기타 석제품 또는 광물성재료의 제품)	850						
10	성찬용 웨이퍼, 실링웨이퍼 등(기타/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라이스페이퍼 외 기타)	706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수출입통계

- 1차 제재부활(2018년 8월7일)이후, 對이란 농식품 수출은 2018년 8월 350만 불에서 10월 72만 8천 불로 약 54% 급감함
 - 1차 제재 기간별 수출품목은 하기와 같음
 - 3개월 연속수출품목: 라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성찬용 웨이퍼, 실링웨이퍼 등(기타/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라이스페이퍼 외 기타)(8월~10월)
 - 2개월 연속수출품목: 젤라틴,글리세롤(8월,9월),조제품 기타(8월,10월)
 - 기타 수출품목: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냉동),에폭시화한 대두,효소 기타(기타),무종자(8월),백삼조제품(인삼차 이외 기타)(10월)

c. 2차 제재기간(2018년 11월~2019년 1월) 한-이란 농식품 수출현황

(단위: 달러)

순번	수출품목	2018년 11월	순번	수출품목	2018년 12월	순번	수출품목	2019년 1월
무역총계		215,022			991,704			481,680
1	포장하지 않은 코코넛지·파치나 물결 모양종이·팩표만든것	213,022	1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604,355	1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446,829
2	기타(산발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000	2	기타(채소종자)	192,844	2	꿀련팔타담배 이외 기타	32,018
-			3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	90,721	3	석제품기타 석제품 또는 광물성재료의 제품	2,100
			4	조제품 기타	86,732	4	상찬용 웨이퍼 실링웨이퍼 등기타(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라이스페이퍼 외 기타)	733
			5	양배추 종자	16,734			
			6	상찬용 웨이퍼 실링웨이퍼 등기타(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라이스페이퍼 외 기타)	318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수출입통계

- 2차 제재공포(2018년 11월5일)이후, 한국 對이란 농식품 수출은 2018년 11월 21만 5천 불에서 2018년 12월 99만 불을 거쳐 2019년 1월 48만 1천 불로 상승세처럼 보이나, 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 수출액 311만불 대비 크게 폭락함
- 2차 제재기간별 수출품목은 하기와 같음
 -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기타(채소종자),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조제품 기타,양배추 종자,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등이 있음

d. 19년 한-이란 농식품 수출현황

(단위: 달러)

순번	수출품목	2019년 1월	순번	수출품목	2019년 2월	순번	수출품목	2019년 3월
무역총계		481,680			307,492			316,258
1	가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446,829	1	가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306,101	1	조제품 가타	126,506
2	관련팔타담배 이외 가타	32,018	2	주로 기계팔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에 신문 잡지 이외 유한안료	1,200	2	글씨틀조각의 것	102,263
3	석제품 가타 석제품 또는 광물성재료의 제품	2,100	3	상천용 워퍼 실용워퍼 등 가타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라스페아퍼외 가타	191	3	호소 가타	58,477
4	상천용 워퍼 실용워퍼 등 가타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라스페아퍼외 가타	733				4	무중자	21,077
	-					5	양배추 중자	7,187
	-					6	아노산 가타	577
	-					7	상천용 워퍼 실용워퍼 등 가타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라스페아퍼외 가타	171
순번	수출품목	2019년 4월	순번	수출품목	2019년 5월	※ 2019년 4월 22일, 미 국무장관(Mike Pompeo)은 이란의 자발적 핵합의(JCPOA) 1단계를 불이행(저능축 우라늄, 중수 저장한도 초과)함을 선언, 이에 2019년 5월 2일부로, 대이란제재법 및 JCPOA 준수(Sanction Waiver ⁶⁾)가 종료됨을 공표함		
무역총계		893,926			167,772			
1	가타(채소중자)	893,362	1	백산(채제품)인삼차 이외 가타	166,963			
2	상천용 워퍼 실용워퍼 등 가타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라스페아퍼외 가타	564	2	아노산 가타	809			

- 미국 정부가 한국 포함 8개 국가에 지난 2018년 11월 5일부터 6개월 간, 이란산 원유수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재 유예조치가 연장되지 않음
 - 2019년 4월 22일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이란의 자발적 핵합의(JCPOA) 불이행을 선언, 2019년 5월 2일에 제재 유예조치 종료를 공표함
 - 이에 2019년 5월 2일부로 對 이란 수출 대금 결제 통로인 우리, IBK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CBI) 계좌가 중단되며, 한국 수출입업체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내 이란 중앙은행의 개설계좌를 통한 대금결제는 사실상 어려워짐
 - 2018년 11월 제재 유예 조치가 시행된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수출입업체와 이란의 무역 거래가 감소한 점 ('18년 11월 약 21만 불 → '19년 5월 약 16만 불), Sanction Waiver 종료에 따라 금년 5월 이란 중앙은행(CBI) 계좌 동결 그리고 이란 말리트 은행의 원화 계좌 동결까지, '19년 5월부터 국내 수출실적이 0에 수렴하게 된 복합요인으로 작용함

6) 대이란제재 법안의 효력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Sanction Waiver

1-6) 이란 수입품목 분류(I~IV) 신규기준 발표

- 이란 수입품목 분류(I~IV) 신규 기준 발표 및 시행 (2018년 6월 20일)
- 이란 산업, 광업 및 무역부(이하 산광부) 장관은 무역청으로 보내는 공문에서 수입되고 있는 품목을 4가지로 구분 및 분류함
 - 이에 다른 환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시행 주문(시행일자 6월 20일)
- 해당 신규 정책 발표목적은 '자국 산업 및 생산자 보호'임
 - 이란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는 해당 수입품목 분류를 반드시 참고해야함 (거래 기준 환율 및 현지 통관 시 유의)

<이란 수입품목 분류(I~IV) 신규 기준>

구분	거래 기준 환율	비고
① 생필품	US\$ 1 = IRR 38,520	중앙은행 직접 NIMA ⁷⁾ 에 의한 공급
② 산업재 및 중간재	US\$ 1 = IRR 42,520	중앙은행 공급 + NIMA 거래
③ 소비재	US\$ 1 = 최소 IRR 42,520 또는 협상 환율	NIMA 거래, 공급·수요자 추가협상
④ 수입금지	거래 불가	1,339개 품목(사치품, 불요불급 품목)

- 첫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필수재, 1,872개)의 경우 공식 대미환율 4만 2,520 이란 리알에서 정부보조금 4,000이란 리알을 차감한 최종 3만 8,520 이란 리알로 수입 가능
 - 해당 분류 품목의 경우 이란 중앙은행이 직접 NIMA 시스템에 외화 할당

7) NIMA system(www.ntsww.ir, Forex Deals Integrated System) 이란 정부가 투명한 환거래를 위해 4월 23일 개설한 온라인 환거래 제도

<이란 NIMA 분류 1 품목일부 리스트>

순번	HS Code	품목명	관세율(%)
1	3909 5000	폴리우레탄	5
2	3921 12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32
3	3926 9099	플라스틱 제품	15
4	4001 2900	천연고무 및 발라타(일차제품·판·시트·스트립 모양으로 한정)	5
5	4002 700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5
6	4703 2900	활엽수류로 만든 화학목재펠프	5
7	4802 5500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	5
8	4811 9020	컴팩트 캐니스터 및 멀티레이어드 박스	15
9	5201 0000	카드(Card) 가공 또는 코움(Comb) 가공 처리되지 않은 면	5
10	5501 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 합성필라멘트 토우	5
11	7019 1200	유리섬유	5
12	7208 362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0
13	8406 9000	증기터빈 부분품	5
14	8407 3490	피스톤 엔진	15
15	8410 1300	수력 터빈(동력이1만kW를초과하는것)	5
16	8414 5990	기체펌프 또는 공기펌프	20
17	8542 3100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5
18	8607 99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 부분품	5
19	4011 1000	승용차용 고무타이어	40
20	9020 0000	호흡용 기기 및 가스마스크	5
21	9021 1010	정형외과용 인체 삽입 바·플레이트·볼트	5
22	9021 3100	인조관절	5
23	9032 8920	에어백 전자제어장치	5
24	9032 8930	ABS(잠김방지브레이크) 전자제어장치	5
25	3907 4000	폴리카보네이트	5
26	1003 9000	보리 씨앗	5
27	9887 0122	농업용 기계 CKD 부분품	10
28	4016 9930	의료용 고무제품	10
29	9401 9020	승용차용 의자	10
30	8507 9010	축전지용 주조 유리판	10

* 출처: NIMA system(www.ntsww.ir)

〈이란 NIMA 분류 2 품목일부 리스트〉

순번	HS Code	품목명	관세율(%)
1	9603 2100	칫솔(덴탈 플레이트 포함)	20
2	1207 4000	참깨 시앗	10
3	1701 1300	사탕수수	20
4	2106 9010	조제 식료품용 안정제	5
5	2401 1000	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잎담배	5
6	2402 2000	결련형 담배	26
7	2403 9100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5
8	2507 0010	고령토	5
9	2710 1940	광물성 연료	5
10	2713 1200	석유코크스·석유역청과 그 밖의 잔재물	5
11	2818 1000	인조 커런덤	5
12	2835 3100	트리포아인산나트륨	10
13	2902 2000	벤젠	5
14	2916 1200	아크릴산 에스테르	5
15	3204 1310	식물 양이온 음료	5
16	3206 5000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	5
17	3208 2040	페인트 첨가제	5
18	3304 3000	메니큐어 및 페디큐어 조제품	26
19	3306 2000	치실	26
20	3307 2000	데오드란트	26
21	3701 3010	오프셋 아연	5
22	3801 3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5
23	3823 7020	공업용 알코올 로렐 미레스텔	5
24	3902 3010	배관 구배	5
25	3903 3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15
26	3907 6120	바틀 그레이드	10
27	3907 9920	폴리에스테르 수지	10
28	7202 1920	합금철(최대 1% 탄소 함유)	15
29	8517 1210	휴대용 전화기 수신기	5
30	8507 9010	축전지용 주조 유리판	10

* 출처: NIMA system(www.ntsww.ir)

- 두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중간재 및 자본재, 3,114개)의 경우 공식환율 4만 2,520이란 리알 기준으로 수입 가능

- 분류II 해당 품목의 경우, 이란 중앙은행 외환이 충분할 경우 직접 NIMA 시스템을 통해 수입상 현지 은행에 외화 할당. 단, 중앙은행 외화 부족 시 수입상이 직접 NIMA 시스템을 통해 외화 공급이 가능한

개인 또는 환전상을 물색해야 함

<이란 NIMA 분류 3 품목일부 리스트>

순 번	HS Code	품목명	관세율(%)
1	9609 100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55
2	9405 4040	조명용 다이오드를 포함한 램프 또는 핸드램프	15
3	9403 4000	주방용 목재가구	55
4	9004 1000	썬글라스	20
5	8703 4010	스테이션웨건 및 경주용 자동차	5
6	8603 100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자주식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	5
7	8523 5210	프록시미터 카드	26
8	8518 3010	헤드폰	5
9	7302 3000	스위치 블레이드, 교차구류, 전철봉 및 그 밖의 크로싱피스	10
10	6911 1000	주방용품	55
11	5801 9000	파일직물	32
12	5603 1110	부직포 롤	26
13	5407 6900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32
14	5002 0000	생사(끈 것은 제외)	26
15	4411 1492	표면피복 섬유판	15
16	4008 2120	건축용 충격흡수 고무	5
17	3921 9040	빌보드를 위한 양면 코팅 PVC 직물	32
18	3815 1100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 화합물에 의해 서포트된 촉매	20
19	3401 1110	목욕용 비누	26
20	2102 1000	활성 효모	10
21	2008 1900	과실·견과류·기타 혼합물	40
22	1804 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15
23	8706 0010	자동차용 엔진을 갖춘 새시	32
24	4823 7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프레스한 제품	10
25	8508 1900	진공 청소기	55

* 출처: NIMA system(www.nts.w.ir)

- 세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소비재, 3,899개)의 경우 수입상이 현지 수입허가를 취득할 시, 기재(수입상·수출상 상호 간 협의 및 결정)된 환율(다만, 최소 기준은 공식환율 4만 2,520이란 리알)로 수입 가능
 - 해당 품목의 경우 NIMA 시스템을 통해서만 외화 할당 가능

〈이란 NIMA 분류 4 품목일부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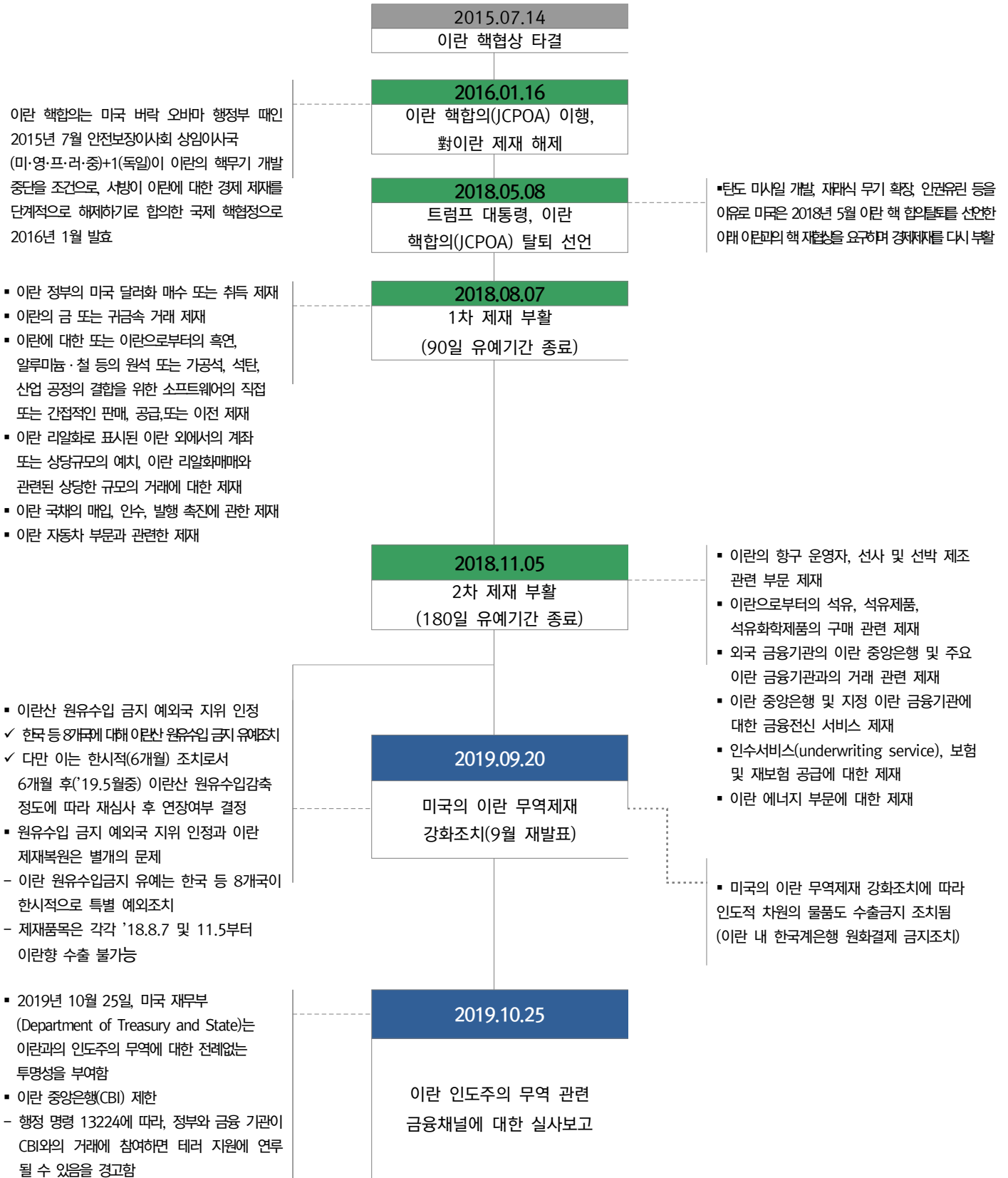
순번	HS Code	품목명	관세율(%)
1	8517 6920	인터넷폰	55
2	7310 2120	식품용 캔	15
3	7321 1120	카운터탑 내장형 가스레인지	55
4	1601 0000	소시지 및 유사 물품	40
5	1905 3100	스위트 비스킷	55
6	2103 2000	토마토 케첩 및 소스	55
7	6211 1100	수영복	55
8	6403 2000	신발류 (바깥 바닥이 고무인 것)	55
9	8450 2000	세탁기(10kg 초과인 것)	10
10	8451 3010	가정용 다리미	5
11	8481 8010	위생밸브	55
12	8481 8016	철로 만들어진 게이트 밸브	26
13	8509 4000	식용 그라인더와 믹서	32
14	8516 1010	냉·온수 정수기	55
15	8516 7100	커피·차 끓이는 기기	55
16	8516 3100	헤어 드라이어	32
17	8516 3200	그 밖의 이용기기	32
18	8516 5000	전자 제린지	55
19	8518 2920	가정용 영화 상영기	40
20	8703 2120	4륜 바이크	20
21	8703 2321	엠블런스	32
22	9504 5010	컴퓨터 및 콘솔 게임용 핸들	5
23	9007 1000	카메라	5
24	8701 200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20
25	8528 7120	IP TV용 톱박스	26
26	8516 7200	토스터	55
27	8516 21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55
28	8510 3000	모발제거기	10
29	8479 6010	증발식 에어컨(최대 수용량 8,000)	55
30	8418 1000	냉장고·냉동고	55
31	7615 2000	알루미늄 위생용품 및 그 부분품	55

* 출처: NIMA system(www.nts.w.ir)

- 네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1,399개)의 경우 이란 국내 생산자 및 산업 보호,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대비 및 외화 관리를 위해 수입 금지 조치됨
 - 옷, 설탕, 자동차, 신발, 화장품 및 의약품 등 포함
 - 해당 발효일(6월 20일) 이전 수입 대금결제가 완료(외화 할당)된 건에 한해서만 수입 가능하며, 나머지 수입 건의 경우, 수입 금지 및 불가·외국산 자동차 수입의 경우 완성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등이 전부 수입 금지에 해당하나,CKD·SKD 차량의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공식 대미환을 적용

제 2 장 미국 대이란 제재 개요

2-1) 제재 발생 배경 및 주요 내용



* 출처: 미국 재무부(www.treasury.gov)

가. 18년~19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배경 및 경과

- 2012~2015년 국제적 봉쇄 하에 이란 경제가 위축되면서 원유 수출은 50% 이상 감소했고, 국고 1,200억 달러의 자산활용 능력을 상실함
 - 2015년 다자간 핵협정(공동 포괄적 행동계획, JCPOA⁸⁾)을 수용한 이후, 이란은 석유 수출관료회복, 외국인 투자 유치확대, 국제금융시스템 수용을 통해 2016~2017년 연간 약 7% 성장률을 기록함
- 이후 탄도 미사일 개발, 재래식 무기 확장, 인권유린 등을 이유로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 핵 합의탈퇴를 선언한 이래 이란과의 핵 재협상을 요구하며 경제제재를 다시 부활시킴
 - 과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해제('16년 1월)된 이후 2년 7개월 만에 재개함
 - 18년 8월 1차 제재, 18년 11월 2차 제재를 거쳐 19년 9월 20일(미국현지시간) 무역제재 강화조치 명령에 이름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경과>

일 시	내 용
15. 7. 14	이란 핵 협상 타결
16. 1. 16	미국 EU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대이란 안보리 제재 해제
18. 5. 8	미국, 이란 핵 협상(JCPOA) 탈퇴 선언
18. 8. 7	미국의 대이란 1차 경제 제재 시행
18. 11. 5	미국의 대이란 2차 경제 제재 시행(8개국 제재 예외국 인정)
19. 9. 20	미국의 이란 무역제재 강화조치(9월 재발표)
19. 10. 25	이란 인도주의 무역관련 금융채널에 대한 실사보고

* 출처 :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intro.do), 미국 재무부(www.treasury.gov)

나. 현재 미국은 2018년 두 단계에 걸쳐 대이란 경제 제재를 시행

- 1차 제재 : 이란과의 귀금속, 철강, 자동차 등의 품목 거래가 금지 및 이란과의 금융 거래 (달러화, 리알화 거래) 통제
- 2차 제재 : 이란의 주요 수익원인 원유 교역을 금지 (관련 금지 품목을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기업은 미국기업과 거래가 중단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을 적용)
- 제재 재발표 : 미국의 이란 무역제재 강화조치(9월 재발표)
- 이란 중앙은행(CBI) 거래경고 : 미국은 미국과 미국 이외의 사람이 이란에 농산물, 식품, 의약품 및 의료 기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 및 허가를 유지하고 있음
이란의 국제 테러 지원행정명령 13224에 따라, 정부와 금융기관이 이란 중앙은행 CBI와 거래하는 것을 테러연루로 간주함을 경고

8)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_공동 포괄적 행동계획): 2015년 7월 이란과 주요 6개국(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독일)이 타결한 합의이며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국제사회가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제재의 골자임

〈미국의 對이란 제재 주요 내용〉

1차 제재(2018년 8월 7일)	2차 제재(2018년 11월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제한 - 이란 정부와 달러화 거래 금지 - 이란 리알화 거래 제외 - 국외 이란 계좌 동결 ▶ 무역 금지 품목 - 금, 귀금속, 알루미늄, 철강, 흑연, 석탄 - 자동차, 상용기, 항공기 부품 - 피스타치오, 캐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및 투자 제한 - 보험계약 인수 금지 - 이란 에너지 산업 투자 및 거래 금지 - 이란 중앙은행, 기타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 중단 ▶ 무역 금지 품목 - 원유, 석유가스, 석유제품, 해운, 조선

이란 인도주의 무역관련 금융채널에 대한 실사보고(2019년 10월 25일)

- OFAC(해외재산관리국_Office of Foreign Control Assets)의 Guidance o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Related Exports to the Iranian People (2013), Guidance on the Sale of Food, Agricultural Commodities, Medicine, and Medical Devices by Non-U.S. Persons to Iran (2013)의 지침에 따라 농산물, 식품, 의약품 및 의료 기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 및 허가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힘 (이란 제재,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이란인 관련 수출에 관한 지침 (2013) / Non-U.S.Persons의 이란으로 농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2013))
 - 단, 미국 정부는 이란 정권이 제재를 피하고 악의적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위 인도 주의적 무역을 이용하는 등 국제 사회의 선의를 지속 남용한다고 판단
 - 이에 인도주의적 거래의 중심이 이란 중앙은행(CBI)과의 거래를 제한함
 - 행정 명령 13224에 따라, 정부와 금융 기관이 CBI와의 거래에 참여하면 테러 지원에 연루될 수 있음을 경고
- * 출처 : 국제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대이란제재 예외국 연장협상과 향후 영향),미재무부,www.treasury.gov

2-2) 미국 대이란 제재 주요부처 및 담당 법규내용

부처	부처상세	법 규정	법 규정 주요내용
재무부	미국 이란 무역 투자 금지의 1차 관할 부처	이란거래규정 (ITR)	재무부의 종합적 이란 통제(수입, (재)수출, 투자, 거래 촉진 금지 등) 규정
		이란자산통제규정 (IACR)	미국 관할 이란 관련 자산 통제 규정
상무부	미국 이란 통제의 2차 관할 부처	수출관리법 (EAA)	미 대통령에 국가안보, 대외정책, 공급부족 사유로 미국 수출통제 권한을 부여('94년 실효)
		수출관리규정 (EAR)	EA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
국무부	특정 단체(확산 및 테러지원 단체 등)를 제재하는 법을 관리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4대체제 통제품목 및 미국의 독자적 이란 통제품목을 수출한 단체 및 개인에 제재 부과
		이란-이라크무기 비확산법	물품 및 기술 이전으로 이란, 이라크의 재래식무기 증강 및 WMD 입수에 의도적, 실질적 기여를 한 개인(국가) 제재
		이란제재법	① 이란 석유자원 개발 능력 증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기여를 한 업체 ② 제재, 물품, 서비스, 기술을 수출, 이전, 제공하여 이란의 재래식 무기 증강에 의도적, 실질적 기여를 한 업체 제재
재무부 및 국무부	위험 단체를 국제테러리스트 또는 확산자로 “지정” 및 제재 권한 부여.	행정명령 13224호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지원자에 대한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행정명령 13382호	WMD 확산자 및 지원자의 자산동결

*출처 : 미재무부, 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pages/iran.aspx

가. 이란거래규정

- 이란거래규정(Iranian Transactions Regulations : ITR)은 수입, (재)수출, 투자, 거래촉진 등 이란과의 전반적인 거래를 통틀어 제재하고 있는 주요 제재규정으로 미국 재무부에 의해서 운영됨
- ITR에서는 미국의 이란 거래, 미국인의 이란 거래뿐 아니라 외국인에 의한 이란 거래도 일부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

- 미국에서의, 미국인에 의한 이란관련 거래 금지 : 쏘품목

(1) 이란품목 수입금지

ITR에서는 모든 이란산 품목 및 서비스, 모든 이란 정부 소유 혹은 통제 하의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함

(2) 對이란 (재)수출, 판매, 공급금지

미국으로부터, 혹은 미국인이 이란(정부)에 물품, 기술, 서비스를 직 간접적 수출, 재수출, 판매, 공급하는 것을 금지함

또한, 다음과 같이 해당 품목이 이란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경우, 제3국으로의 물품, 기술, 서비스 수출, 재수출, 판매, 공급도 금지함

- 해당 물품, 기술, 서비스가 이란 또는 이란 정부에 직 간접적으로 공급, 환적, 재수출되기 위한 목적을 지님
- 해당 물품, 기술, 서비스의 전량 또는 대부분이 이란 또는 이란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공급, 환적, 재수출될 물품, 기술 서비스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혼합되거나, 포함될 목적을 지님

(3) 이란 관련 거래 및 업무에 종사 금지

미국인은 이란산 물품 또는 서비스, 이란 정부가 소유 혹은 통제하는 물품과 관련된 거래 및 업무에 종사가 금지되며 이란 또는 이란 정부를 위해 직 간접적 수출, 재수출, 판매, 공급될 물품, 기술, 서비스 관련 거래 및 업무 종사가 금지됨

(4) 신규투자 금지

미국인은 이란 의, 또는 이란정부 소유 혹은 통제하의 자산(단체, 개인 포함)에 신규투자를 시행하는 것이 금지됨

(5) 對이란 거래촉진 금지 및 이란 석유자원 개발관련 거래 금지

미국인은, 만약 미국인이 시행하였거나, 미국 에서 시행되었다면 본 규정에 의해 금지되었을 외국인의 거래를 승인, 금융, 촉진, 보증하는 것이 금지됨

아울러 미국인은 다음을 수행하거나 다음에 참가할 수 없으며 또한 미국인이 소유 혹은 통제 하는 단체가 다음을 수행 또는 참가하도록 승인하는 행위가 금지됨

나. 외국인에 의한 미국산 품목 재수출 금지

- ITR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수출된 품목이 이란으로의 재수출이 의도된 품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나 알만한 사유가 있었던(Reason to know) 경우에 금지사항임
 - 해당 품목이 미국에서 이란으로 수출되는데 있어 ITR 여타 규정들에 의하여 수출허가 대상인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면 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수출된 품목을 이란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함
- 또한 상기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 ITR 금지대상인 재수출의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 밖에서 외국산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된 경우 또는 외국산 완제품에 편입된 허가대상 미국산 품목의 총 가액이 완제품 가액의 10% 미만인 경우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됨

다. 면제

- 개인적 소통, 인도적 기부, 정보 및 정보 자료(출판물, 포스터 등), 여행 관련 거래는 상기 금지행위에서 제외되므로 면제 관련 부분을 참조토록 함

라. 허가대상 행위

- 가)와 나)의 금지대상 행위 중 일부는 일반허가로 승인하여 이러한 경우는 재무부의 허가없이 해당 행위를 진행할 수 있음
 - 또한, ITR에서는 일부 금지행위에 대해 개별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건별로 심사토록 함. 단, 허가 대상행위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허가대상이 아닌 행위는 금지됨

2-3) 미국 대이란 제재 내역

가. 미국 외 대이란 식품, 농산물, 의약품 및 의료 기기 판매 지침



DEPARTMENT OF THE TREASURY
WASHINGTON, D.C. 20220

Guidance on the Sale of Food, Agricultural Commodities, Medicine, and Medical Devices by Non-U.S. Persons to Iran

Date: July 25, 2013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is issuing this Guidance in response to inquiries it has received from medical supplie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with regard to the humanitarian exceptions to sanctions on Iran. As we have stated in previous guidance,¹ the U.S. maintains broad authorizations and exceptions that allow for the sale of food, medicine, and medical devices by U.S. persons or from the United States to Iran. U.S. sanctions laws provide similar allowances for sales of food, agricultural commodities, medicine, and medical devices² to Iran by non-U.S. persons. To further assist non-U.S. persons, including banks and medical suppliers, in fully understanding these allowances, this Guidance underscores that these sales to Iran do not trigger sanctions under U.S. law. The financing or facilitation of such sales by non-U.S. persons likewise does not trigger sanctions, so long as the transaction does not involve certain U.S.-designated persons (such as Iran’s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IRGC) or a designated Iranian bank) or proscribed conduct.³

The conduct or facilitation of payments for such sales by foreign banks are not subject to U.S. sanctions when the payments originate from accounts of the Central Bank of Iran (CBI) or from accounts of Iranian commercial banks that have not been designated by the U.S. For example, Iranian oil revenues held in CBI or non-designated Iranian bank accounts at foreign banks may be used to finance exports of food, agricultural commodities, medicine, or medical devices to Iran – from the country in which the account is held or from any other foreign country – without triggering sanctions for the foreign bank, as set forth in the Iranian Financial Sanctions Regulations.⁴

* 출처 : OFAC의 Federal Register_연방공보집 Vol. 76, No. 197 / Wednesday, October 12, 2011 / Rules and Regulations

- 13년 7월 제정된 대이란 식품, 농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 지침에서 미국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판매하는 식품, 의약품 및 의료품 거래 지침을 다음과 같이 명시함
 -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 (IRGC)관련자, 이란 중앙 은행 (CBI)의 계좌 또는 미국에서 지정하지 않은 이란 상업 은행의 계좌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거나, 농산물, 의약품 또는 의료 기기 수출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쓰일 시,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함

나. 인도주의적 식품 및 의약품 기부⁹⁾에 대한 OFAC 지침

- 이란과 수단이 지정되지 않은 수단에 식품 및 의약품 기부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사용되며 이란의 금지로부터 면제됨
 - 규정 (“ITR”) 및 수단 제재 규정 (“SSR”)에 따라서 미국은 무역 제재 개혁에 따라 발행된 ITR 또는 SSR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음
- 상업적 수출 또는 이란 및 수단의 비 특정 지역으로 식품 및 의약품의 재수출은 TSRA의 라이선스 요구 사항
 - OFAC는 일반적으로 기증하거나 상업목적의 의료 기기는 TSRA의 적용을 받으므로 TSRA 라이선스 또한 미국 이외의 사람에게 식품 구매를위한 기금 기부, 이란이나 수단이 아닌 비 특정 지역으로 수출되는 의약품 또는 의료 기기 라이선스가 필요함

다. 식품_이란 제재 법규근거

- OFAC(해외재산관리국_Office of Foreign Control Assets)의 Federal Register_연방공보에 따르면, 현재 이란의 거래규정은 OFAC의 31 CFR 538 및 560항의 수단과 이란 거래 규정이 함께 명시됨 세부조항은 하기와 같음

<미국의 對이란,수단 제재근거 법령>

<이란 제재근거 법령_원본>	<이란 제재근거 법령_번역>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31 CFR Parts 538 and 560 Sudanese Sanctions Regulations; Iranian Transactions Regulations AGENCY: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Treasury. ACTION: Final rule.	국무과 해외재산관리국 31 CFR 538 및 560 수단 제재 규정; 이란 거래 규정 에이전시 : 외국 자산 사무소통제, 재무. 행동 : 최종 규칙

* 출처 : OFAC의 Federal Register_연방공보집 Vol. 76, No. 197 / Wednesday, October 12, 2011 / Rules and Regulations

○ 31 CFR 538 및 560 법규상세 요약

- 수단 및 이란(이란은 31CFR 560규정근거)의 거래 제재규정 발행 및 식품등의 라이선스 거래 규정권한을 정의함
- 해당 국가의 식품의 수출 또는 재수출 지역의 지정된 개인 및 단체지역 이외에 특정 지정식품, 특정 수출품목 관련된 사항이 포함됨
- 해당법령 시행일 : 2011년 10월 12일

9) 2019년 9월20일 (미국 현지시간)부로 인도주의적 식품수출도 미국의 특별공시 전까지 판매금지. KOTRA/전략물자관리원

2-4) 미국 대이란 금융 제재 사항

가. 이란 금융 및 은행 제재 조항

- 미 재무부 OFAC는 이러한 CISADA의 취지에 따라 2010. 8. 16. 이란 금융제재 규정 (Iranian Financial Sanctions Regulations, 31 CFR part 561, “IFSR”)을 발효함

<이란 금융제재 규정(Iranian Financial Sanctions Regulations, 31 CFR part 561, “IFSR”)>



Issued in Washington, DC, on this 11th day of March 2013.

Leslie Kramerich,
Acting Chief Policy Officer,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FR Doc. 2013-06085 Filed 3-14-13; 8:45 am]

BILLING CODE 7709-01-P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31 CFR Part 561

Iranian Financial Sanctions Regulations

AGENCY: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Treasury.

ACTION: Final rule.

SUMMARY: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is amending the Iranian Financial Sanctions Regulations (the "IFSR") to implement sections 503 and 504 of the Iran Threat Reduction and Syria Human Rights Act of 2012, which amended section 1245 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2; and section 1, portions of section 6, and other related provisions of Executive Order 13622 of July 30, 2012.

DATES: *Effective Date:* March 15, 2013.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ssistant Director for Sanctions Compliance & Evaluation, tel.: 202/622-2490, Assistant Director for Licensing, tel.: 202/622-2480, Assistant Director for Regulatory Affairs, tel.: 202/622-4855, Assistant Director for Policy, tel.: 202/622-,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r Chief Counsel (Foreign Assets Control), tel.: 202/622-2410,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Department of the Treasury (not toll free numbers).

SUPPLEMENTARY INFORMATION:

Electronic and Facsimile Availability

This document and additional information concerning OFAC are available from OFAC's Web site (www.treasury.gov/ofac). Certain general information pertaining to OFAC's sanctions programs also is available via facsimile through a 24-hour fax-on-demand service, tel.: 202/622-0077.

related provisions of 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 (Pub. L. 111-195) (22 U.S.C. 8501-8551) ("CISADA"), which had been signed into law by the President on July 1, 2010. Subsection 104(c) of CISADA required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prescribe regulations to prohibit, or impose strict conditions on, the opening or maintaining in the United States of a correspondent account or a payable-through account for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that the Secretary finds knowingly engages in specified sanctionable activities.

On February 27, 2012, OFAC amended the IFSR and reissued them in their entirety (77 FR 11724), in order to implement section 1245(d) 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2 (Pub. L. 112-81) (22 U.S.C. 8513a) ("NDAA"), which had been signed into law by the President on December 31, 2011. Section 1245(d)(1) of the NDAA provides for the President to prohibit the opening, and prohibit or impose strict conditions on the maintaining, in the United States of a correspondent account or a payable-through account by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that the President determines has knowingly conducted or facilitated any significant financial transaction with the Central Bank of Iran or another Iranian financial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pursuant to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50 U.S.C. 1701 et seq.) ("IEEPA").

Section 1245(d)(2) of the NDAA excepted transactions for the sale of food, medicine, or medical devices to Iran from the imposition of sanctions under section 1245(d)(1). Section 1245(d)(3) of the NDAA limited the imposition of sanctions pursuant to section 1245(d)(1) on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owned or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including the central bank of a foreign country, to significant transactions for the sale or purchase of petroleum or petroleum products to or from Iran. Section 1245(d)(4)(D) of the NDAA provided for an exception from the imposition of sanctions pursuant to section 1245(d)(1) on any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if the President determines and periodically reports to

With Respect to Iran" (77 FR 45897, August 2, 2012) ("E.O. 13622"). The President issued E.O. 13622 to take additional steps with respect to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in Executive Order 12957 of March 15, 1995,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Government of Iran's use of revenues from petroleum, petroleum products, and petrochemicals for illicit purposes, Iran's continued attempts to evade international sanctions through deceptive practices, and the unacceptable risk posed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by Iran's activities.

Section 1(a) of E.O. 13622 authorize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nd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to impose correspondent and payable-through account sanctions on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determined to have knowingly conducted or facilitated any significant financial transaction with the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NIOC"); with Naftiran Intertrade Company ("NICO"); or for the purchase or acquisition of petroleum, petroleum products, or petrochemical products from Iran. Section 10 of E.O. 13622 defines the terms NIOC and NICO as including any entity owned or controlled by, or operating for or on behalf of, respectively, NIOC and NICO.

Section 1(c) of E.O. 13622 provides that sanctions under subsections 1(a)(i) and (ii) for transactions with NIOC or NICO or for the purchase or acquisition of petroleum or petroleum products from Iran will apply only if (1) the President determines under subsections 1245(d)(4)(B) and (C) of the NDAA that there is a sufficient supply of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from countries other than Iran to permit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purchase of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from Iran by or through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nd (2) a 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 under subsection 1245(d)(4)(D) of the NDAA does not apply with respect to the transaction.

Thus, transactions with NIOC or NICO or for the purchase or acquisition of petroleum or petroleum products from Iran are excepted from the imposition of sanctions under section 1(a) of E.O. 13622 if the transaction qualifies for the significant reduction

*출처 : 미재무부, Iranian Financial Sanctions Regulations, 31 CFR part 561, "IFSR"

(A) 미국 재무장관이 지정한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내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 또는 지불계좌(payable through account)에 대한 금지나 엄격한 조건 부과

(1) 제재 대상 행위

CISADA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 금융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알면서 행하였다고 미 재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여기서 ‘알면서(knowingly)’ 라는 것은 그 행위·사정·결과를 실제로 알고 있거나(has actual knowledge) 알았어야만 하는(should have known) 경우를 의미함

IFSR에서는 외국 금융기관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통화로 업무를 처리하는지를 불문함 (한국 내에 소재한 금융기관도 IFSR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가)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리인 또는 관계회사를 포함한 이란정부의 다음과 같은 활동을 용이 TP95PT(“facilitates”¹⁰)TP96PT하게 하는 행위

- 대량 살상무기 혹은 대량 살상무기 발사시스템을 개발 또는 취득하려는 활동
-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의하여 외국 테러단체로서 지정된 단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거나, 1996년법 제16조가 정의한 바와 같은 국제적인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활동

10) 5 PT“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IFSR(561.403)은 특정 행위(efforts), 활동(activities) 또는 거래(transactions)를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지원 제공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화(currency),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 증권 또는 기타 다른 가치 이전(transmission of value)의 제공; 매입(purchasing); 판매(selling); 운송(transporting); 교환(swapping); 중개(brokering); 자금조달(financing); 승인(approving); 보증(guaranteeing); 또는 기타 여하한 유형의 서비스의 제공; 또는 인력의 제공;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여하한 유형의 상품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행위들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술함

2-4) 제재에 따른 對이란 주요국 입장

[EU유럽연합]

가. EU의 대 이란 제재조치 사례

○ 유럽연합(EU)

- 2002~2005년 12월에 맺은 이란-EU간 통상 협력협정(TCA) 협상(TCA11)으로 우호적 관계였음
- 나. 2010년 6월 결의안 1929호 통과 이후 유럽연합(EU)의 이란 제재 조치가 시행됨
- 이후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지 않고,
2012년 JCPOA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 EU 대이란 제재항목 해제됨

EU의 대 이란 제재해제 항목 (해제)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및 가스 수입 금지
이란산 원유나 석유화학제품 운송보험 금지 및 선적과 관련된 몇몇 이란 회사의 자산 동결 조치
금, 귀금속, 다이아몬드, 석유화학 분야의 이란과의 교역 금지
이란 중앙은행 자산 동결(민간무역 승인 제외)
유럽 및 모든 이란 은행 간 및 단기 거래 금지 (수출신용, 보증, 보험)
흑연, 반제품 금속, 산업용 소프트웨어, 이란으로의 수출 금지 조선기술, 석유저장시설, 이란 유조선과 화물선을 위한 서비스



EU의 대 이란 제재유지 항목
이란에 대한 무기, 미사일 기술, 민감한 품목의 판매 금지, 내부 억제 수단
인권유린 또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란인 및 단체에 대한 EU 기반 자산 동결 (아래 부록 C 참조)

* 출처 : 미 재무부(www.treasury.gov), U.N. Security Council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11) 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2002년 12월 시작된 이란-EU간 통상 협력협정(TCA) 협상

Appendix C. Entities Sanctioned Under U.N. Resolutions and EU Decisions

Table C-1. Entities Sanctioned Under U.N. Resolutions and EU Decisions

Persons listed are identified by the positions they held when designated; some have since change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Entities in italics were “delisted” on Implementation Day. Entities in standard font to remain listed until Transition Day (October 2023), unless removed earlier by Security Council

Entities Sanctioned by Resolution 1737 (resolution no longer active)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rayand Technique (centrifuge program) - Defense Industries Organization (DIO) - 7th of Tir (DOI subordinate) - Shahid Hemmat Industrial Group (SHIG)—missile program - Shahid Bagheri Industrial Group (SBIG)—missile program - Fajr Industrial Group—missile progra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 Mohammad Mehdi Nejad Mouri (Malak Ashtar University of Defense Technology rector) - Bahmanyar Morteza Bahmanyar (AIO official) - Reza Gholi Esmaeli (AOI Official) - Ahmad Vahid Dastjerdi (Head of AOI) - Maj. Gen. Yahya Rahim Safavi (Commander in Chief, IRGC) - Gen. Hosein Salimi (Commander, IRGC Air For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 (AEIO)</i> - <i>Mesbah Energy Company (Arak supplier)</i> - <i>Mohammad Qanadi, AEIO Vice President</i> - <i>Behman Asgarpour (Arak manager)</i> - <i>Ehsan Monajemi (Natanz construction manager)</i> - <i>Jafar Mohammadi (Adviser to AEIO)</i> - <i>Dawood Agha Jani (Natanz official)</i> - <i>Ali Hajinia Leilabadi (Director of Mesbah Energy)</i> |
|---|---|---|

Entities/Persons Added by Resolution 1747 (resolution no longer active)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munition and Metallurgy Industries Group (controls 7th of Tir) - Parchin Chemical Industries (branch of DIO) - Sanam Industrial Group (subordinate to AIO) - Ya Mahdi Industries Group - Sho'a Aviation (produces IRGC light aircraft for asymmetric warfare) - Qods Aeronautics Industries (produces UAV's, para-gliders for IRGC asymmetric warfare) - Pars Aviation Services Company (maintains IRGC Air Force equipment) - Gen. Mohammad Baqr Zolqadr (IRGC officer serving as deputy Interior Minister) - Brig. Gen. Mohammad Hejazi (Basij command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ig. Gen. Qasem Soleimani (Qods Force commander) - Fereidoun Abbasi-Davani (senior defense scientist) - Mohasen Fakrizadeh-Mahabai (defense scientist) - Mohsen Hojati (head of Fajr Industrial Group) - Ahmad Derakshandeh (head of Bank Sepah) - Brig. Gen. Mohammad Reza Zahedi (IRGC ground forces commander) - Naser Maleki (head of SHIG); Brig. Gen. Morteza Reza'i (Deputy commander-in-chief, IRGC) - Vice Admiral Ali Akbar Ahmadiyan (chief of IRGC Joint Staf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Karaj Nuclear Research Center</i> - <i>Novin Energy Company; Cruise Missile Industry Group</i> - <i>Kavashyar Company (subsidiary of AEIO)</i> - <i>Bank Sepah and Bank Sepah International PLC (funds AIO and subordinate entities in missile activities) *</i> - <i>Esfahan Nuclear Fuel Research and Production Center and Esfahan Nuclear Technology Center</i> - <i>Seyed Jaber Safdari (Natanz manager)</i> - <i>Amir Rahimi (head of Esfahan nuclear facilities); Mehردادا Akhlaghi Ketabachi (head of SBIG)</i> |
|--|---|--|

* Bank Sepah and Bank Sepah International were delisted on Implementation Day by a separate decision the Security Council. They were not named on the Resolution 2231 attachment of entities to be delisted on that day. No information has been publicized whether Ahmad Derakshandeh, the head of Bank Sepah, was also delisted.

* 출처 : U.N. Security Council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나. 이란 제재에 영향을 받은 이란 내 EU비즈니스 동향

- 최근 유럽의 대기업들이 이란과 관련된 거래를 중단하거나 퇴장함

<이란 내 EU업체 비즈니스 동향>

분류	세부내용
자동차	<p>르노와 프랑스의 시트로엥은 JCPOA 이후 10억 달러 투자금 회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합작 투자로 이란에서 연간 35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자 했으나 중단함 - 메르세데스 벤츠 또한 자동차 생산 중단함 -
	<p>독일의 폴크스바겐이 소유한 스웨덴의 스캐니아社 이란 현지 트럭 조립 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에 1,350대의 버스를 공급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했지만 이란에서 트럭 조립을 중단함
은행	<p>미국 JCPOA가 이란의 DZ 은행과 독일의 알리안츠, 오스트리아의 오버뱅크와 프랑스의 반케 뵘서 프레레스와의 거래 중단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7월 독일의 중앙은행(Deutsche Fundsbank)은 미국의 요청으로 이란의 유로파이스체-이란티스체 핸들스뱅크(EIH) 현금 4억 달러 철수를 막는 규정 변경을 도입함 - EIH는 이란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종종 분데스은행과의 거래에 협력함 (EIH는 JCPOA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의 제재로부터 "상계"되었으나, 2018년 11월 5일에 금지 은행 등록됨)
운송업체	<p>독일의 하파그로이드와 덴마크의 AP몰러-머스크는 이란으로의 운송을 중단</p>

(위)이란 투자 중단 ↑ ↓ (아래)이란 투자 지속 사례

에너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웨이의 사가 에너지(노르웨이는 EU 미가입국)는 이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함 - 이탈리아의 FS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14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함
-------	---

* 출처 : 미 재무부(www.treasury.gov), EC21RNC 인터뷰

다. EU의 SWIFT 전자결제 시스템

- 브뤼셀에 본부를 둔 스위프트 전자 지불 시스템의 경영진은 재정 리스크와 EU 정부의 정책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함
- 2012년 3월 스위프트는 EU가 14개 EU 제재대상 이란 은행을 추방해 달라는 요청에 응함
 - 일부 이란 은행들은 여전히 '타겟II' 제도를 통해 유럽중앙은행과 전자거래를 할 수 있었음
 -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지 않았는데도 스위프트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2018년 말 다시 미국의 제재로 '지정된' 이란 은행들을 차단함

[러시아 RUSSIA]

- 이란, 러시아 양국은 2017년 10월 말 푸틴 대통령의 테헤란 방문 때 광범위한 에너지 개발협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2018년 12월 이란은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이란의 석유 판매를 제재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란 선박에게 석유를 인도하기 위해 항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지난 2015년 4월 이란이 2007년 판매한 S-300 방공시스템에 대한 자체 제한을 해제했으나 결의안 1929호가 채택된 뒤 이를 거부해 사실상 방공시스템 공급을 제한하지는 않았음
- 러시아는 2016년 4월 S-300 배터리 5대를 납품하기 시작함
 - 이란 국방장관은 2016년 2월 러시아를 방문해 2020년 10월 유엔의 이란 무기 수입 금지 기간이 만료된 뒤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전투 시스템의 향후 구매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중국 CHINA]

- 2019년 8월, 이란과 중국은 2016년에 맺은 투자계약을 확대함. 이란의 가스 및 석유 화학 부문에 총 2,8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란의 운송 및 제조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1,2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함
- 미국 제재가 강화되며 2018년 4월, 미 상무성(BIS, 수출 관리 규정을 규제하는)은 “수출 특권에 대한 배제 조치”를 발표함
 - 중국에 기반을 둔 ZTE Corporation 및 그 계열사에 대한 수출 특권 거부 조치를 발표함
 - ZTE가 금지된 미국 통신 기술을 이란(및 북한)에 선적한 것에 대해 BIS 규정위반으로 제재를 취함
- 중국은 SRE¹²⁾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2일 까지 이란 석유를 지속 수입함
 - 미국 정부는 이란산 석유를 수송한 중국기업 6곳과 개인 5명에 19년 9월25일자로 제재를 가함
 -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의 자회사들인 ‘코스코 해운 탱커’, ‘코스코 해운 탱커 선원·선박 관리’를 제재 목록에 올림
 - ‘콩코드 석유’, ‘페가수스 88 유한공사’, ‘쿤룬 해운’, ‘쿤룬 지주’ 등 4곳도 추가 제재함

12) 미국의 한국 등 8개국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예외 유예조치(SRE·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s)

[일본 Japan]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은 미국과 EU가 부과한 것과 유사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행함
 - 2011년 이후 이란 석유 수입을 급격히 줄였으며, 일본 은행은 이란이 은행에 보유한 외환 자산 송환을 제한함
 - 2018년 10월 이란 석유 구매를 일시적으로 줄이고, 이듬해 11월 5일에 다시 SRE 제재 예외를 받음
 - 2019년 10월 말, 일본의 자동차 회사 Mazda와 Toyota와 현대 자동차는 이란에서 자동차를 공동생산하기 위한 합작 투자를 중단함

[대만/싱가포르 Taiwan/Singapore]

- 대만은 이란산 원유의 소규모 구매자였으며 2016년 제재 조치가 완화된 후 이란 오일 수입을 재개함
 - 대만은 2018년 11월 5일부터 SRE를 받았지만 2018년 말부터 이란 오일 구매를 중단함
- 싱가포르는 이란산 원유를 소액 구매해 왔으며 2018년에 발효된 이후 이란 오일 구매를 중단함

[인도 India]

- 2011년 이후 이란 원유 수입을 크게 줄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란 원유를 처리하는 정유소 개보수에 비용을 투자함
 - 2016년에 제재가 완화된 후, 이란에서 인도의 석유 수입은 2018년 7월에 80만 배럴로 증가함
- 인도 기업들은 2012-2016년에 종료되거나 둔화되었던 작업을 재개함
 - 2012-2016년 동안 석유 구매로 인해 65억 달러를 이란에 지불함
- 인도의 중앙 은행은 이란과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테헤란에 기반을 둔 아시아 청산 동맹 (Asia Clearing Union)을 거치지 않고 인도의 석유 구매량의 절반을 인도 루피로 이란에서 결제하기로 합의함
- 최근까지 이란은 루피 계정을 사용하여 인도의 밀, 의약품, 쌀, 설탕, 콩, 자동차 부품 및 기타 제품을 구매함

[파키스탄 Pakistan]

- 2010년 6월 12일에 7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를 체결한 이후, 최근 이란 가스를 파키스탄으로 운반하는 파이프 라인 프로젝트를 가동함

[터키 Turkey]

- 이란과 천연가스 등 제재 대상 품목 포함 거래 지속 희망
- 미국의 이란 제재 시행 발표에도 불구하고 터키-이란 정상은 18년 9월 정상회담에서 석유 및 주요물품 교역, 은행간 협력 확대, 양국 화폐 활용 무역 등에 관해 논의함
-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이란 제재 시행에도 기체결 장기계약으로 인해 이란산 천연가스 수입 지속이 불가피함을 발표(* 18.9.25., Reuter 인터뷰)
- 터키 외교부 장관은 이란 제재가 일방적임을 주장하며, 미국정부가 EU, 터키 등 관계국들과 제재 조치 관련 협의요청(* 18.10.24, 관영 Anadolu 통신)

[카타르 Qatar]

- 외교부 성명 통해 중립적 입장 발표함
- 카타르 정부, '18년 5월 외교부를 통해, 'JCPOA 관련 성명(Statement on the Development of the Iranian Nuclear Deal)' 발표
 - 해당 성명을 통해 카타르는 중동 지역은 '비핵무기자유지대(Nuclear Weapon Free Zone)'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란에 대한 입장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중립적인 입장

[쿠웨이트 Kuwait]

- 쿠웨이트 정부, 공식적인 입장 발표 없음
- 쿠웨이트는 카타르와 더불어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GCC 국가임과 동시에 이란과 적대 관계인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긴밀한 관계이므로, 이번 미국의 對이란 제재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음

2-5) 미국 대 이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가. Secondary Boycott 개요

- 미국 정부의 대 이란 경제제재는
 - 1) US Persons가 이란 또는 이란인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Primary Sanctions와
 - 2) Non-US Persons가 이란과 관련된 특정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재를 부과할 것을 위협하여 Non-US Persons로 하여금 해당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Secondary Sanctions로 구분됨

나. Banking Activity에 적용되는 Secondary Sanction

- 2018년 5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에 체결된 JCPOA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함과 동시에 JCPOA에 따라 폐지되거나 유예된 모든 경제제재를 재부과(“Snapback”)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에 따라 90일 또는 180일 간의 유예기간(“wind-down periods”) 이후부터
 - (i) Secondary Sanctions의 재부과,
 - (ii) US Persons에 대한 일반 면허(“general license”) 및 우호적 면허 정책(“favorable licensing policies”)의 철회 및
 - (iii) SDN list로부터 제외되었던 개인 및 조직(“entities”)의 재지정 등의 제재 복원이 예정되었고, 2018년 8월 6일 및 11월 4일의 경과로 현재 미국의 대 이란 제재는 전면 복원된 상태
 - 최근 OFAC은 180일의 유예기간 만료와 함께 11월 4일 이후 적용될 대 이란 제재에 관한 지침서(이하 “OFAC 지침서”)를 발간함

〈Banking Activity 관련 Secondary Sanctions 주요 내용〉

1. OFAC 지침서에 따르면, 여러 제재프로그램에 따라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으로 지정된 이란 은행에 중대한 원조를 제공하거나 이 은행과 중요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Secondary Sanctions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네트워크 접근이 차단됨

또한 OFAC은 은행계좌를 이용한 제재대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Non-US bank들에 은행 장부상 존재하는 위 Dual-designated Iranian banks의 모든 계좌의 동결함

“여러 제재프로그램에 따라 SDN으로 지정된 이란 은행”은 제재 프로그램 중 [IRAN] Tag(Iranian Transactions and Sanctions Regulations)에 따라서만 SDN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IFSR(Iranian Financial Sanctions Regulations), NP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ors Sanctions Regulations) 및 SDGT(Global Terrorism Sanctions Regulations) - 에 따라서도 SDN으로 지정된 이란 은행을 의미함

현재 OFAC은 (이란 관련성 이외에도) 반테러 및 확산방지 관련 제재로서 Ansar Bank, Bank Saderat, Bank Mellat, Parsian Bank, Mehr Bank 등의 이란 은행을 SDN으로 분류함. 해당 은행들은 [IRAN] (Tag)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IFSR, NPWMD 및/또는 SDGT)에 따라서도 SDN으로 지정됨

단, 이란 은행들 중에서도 Pasargad Bank 등 일부 은행은 오직 [IRAN]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SDN 리스트에 추가되어 있음

* 출처 : OFAC(www.treasury.gov), Changes to the Non-SDN Iranian Sanctions Act List, Specific Guidance on the Iran Sanctions, Applying for a Specific OFAC License

2. 이란중앙은행은 [IRAN] Tag 하에서만 SDN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와 함께 “Secondary Sanctions 적용 대상” 으로 추가 표시됨에 따라, 오로지 [IRAN] Tag 하에서만 SDN으로 지정된 다른 이란 은행들과는 달리 Secondary Sanctions의 대상이 됨

OFAC의 FAQ 177에 따르면, 이란중앙은행과의 모든 중요한 거래가 제재 대상이 되므로, 이란 중앙은행이 거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단지 ‘중개인’ 으로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로 간주됨

상단 이미지 OFAC의 FAQ 641에 의하면, 이란에 농산물, 음식물,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경우, 또는 위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 관련하여 이란중앙은행을 통하여 (Dual-designated Iranian banks 제외) 지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Secondary Sanctions가 적용되지 않음

OFAC의 FAQ 645에 따르면, OFAC은 SWIFT로 하여금 이란중앙은행 및 Dual-designated Iranian banks의 SWIFT 네트워크 접근권한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다만 [IRAN] Tag 하에서만 제재대상으로 지정되었을 뿐인 다른 이란 은행들은 해당사항 없음)

OFAC은 이란중앙은행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제재대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Non-US bank들로 하여금 은행장부상 존재하는 이란중앙은행의 모든 계좌를 동결함

인도주의적 물품에 대한 수출 및 OFAC이 제재대상 행위로 규정하지 아니한 행위와 관련된 계좌 거래는 허용함
(미국의 이란 무역제재 강화조치(9월 재발표)로 인해 인도주의적 물품도 거래불가함)

* 출처 : OFAC(www.treasury.gov), Changes to the Non-SDN Iranian Sanctions Act List, Specific Guidance on the Iran Sanctions, Applying for a Specific OFAC License

제 3 장 미국 경제제재로 인한 농식품수출입,물류,대금결제 영향

3-1) 미국 경제제재로 인한 농식품 수입 영향

가. 이란 수입 가능 및 불가능 품목¹³⁾

○ 31 CFR 538 및 560 법규 중 이란 식품 관련 정보

- 하위 법령인 § 560.405 부수적 거래라이선스 거래 승인 내역에 따름

(d) 다음에 대한 라이선스 판매 자금 조달수출 또는 재수출에 지정된 식품

§ 560.530 (a) (2) (iii), 기타 농업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으로 명시된 § 560.530 (a) (2) (ii), 식품,

§ 560.530 (a) (2) (ii) 균용법 집행 구매자 또는수입 업체만이 해당제품 취급가능

<OFAC의 Federal Register_연방공보집 Vol. 76, No. 197 / Rules and Regulations>

63196 Federal Register / Vol. 76, No. 197 / Wednesday, October 12, 2011 / Rules and Regulations

p. 256; E.O. 12957, 60 FR 14615, 3 CFR, 1995 Comp., p. 332; E.O. 12959, 60 FR 24757, 3 CFR, 1995 Comp., p. 356; E.O. 13059, 62 FR 44531, 3 CFR, 1997 Comp., p. 217.

■ 8. Amend § 560.405 by revising paragraph (d) and adding a new note to paragraph (d) to read as follows:

§ 560.405 Transactions incidental to a licensed transaction authorized.

* * * * *

(d) Financing of licensed sales for exportation or reexportation of the excluded food items specified in § 560.530(a)(2)(iii), other agricultural commodities not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food* set forth in § 560.530(a)(2)(ii), food (as defined in § 560.530(a)(2)(ii)) intended for military or law enforcement purchasers or importers, medicine, or medical devices to Iran, to the Government of Iran, or to persons in third countries purchasing specifically for resale to any of the foregoing (see § 560.532); and

Note to § 560.405(d): See § 560.530(a)(2) for a general license authorizing the exportation or reexportation of food (including bulk agricultural commodities listed in appendix B to this part) to the Government of Iran, individuals or entities in Iran, or persons in third countries purchasing specifically for resale to any of the foregoing, and the conduct of related transactions.

* * * * *

■ 9. Amend § 560.530 by revising paragraph (a), adding a note to new paragraph (a)(2), and revising paragraph (b), the introductory text to paragraph (c), paragraph (d)(5), and paragraphs (e)(1) introductory text, (e)(2), and (e)(3), and adding new paragraph (f) to read as follows:

on the date of the signing of the contract. No specific license will be granted for the exportation or reexportation of agricultural commodities, medicine, or medical devices to any entity or individual in Iran promoting international terrorism, to any narcotics trafficking entity designat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2978 of October 21, 1995 (60 FR 54579, October 24, 1995) or the Foreign Narcotics Kingpin Designation Act (21 U.S.C. 1901–1908), or to any foreign organization, group, or persons subject to any restriction for its or their involvement i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missile proliferation. Executory contracts entered into pursuant to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prior to the issuance of the one-year specific license described in this paragraph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signed on the date of issuance of that one-year specific license (and, therefore, the exporter is authorized to make shipments under that contract within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issuance of the one-year specific license).

(2)(i) *General license for the exportation or reexportation of food.*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a)(2)(iii) and (a)(2)(iv) of this section, the exportation or reexportation of food (including bulk agricultural commodities listed in appendix B to this part) to the Government of Iran, to any individual or entity in Iran, or to persons in third countries purchasing specifically for resale to any of the foregoing, and the conduct of related transac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making of shipping and cargo

(iii) *Excluded food items.* Paragraph (a)(2)(i) of this section does not authorize the exportation or reexportation of the following food items: castor beans, castor bean seeds, raw eggs, fertilized eggs (other than fish and shrimp roe), dried egg albumin, live animals, Rosary/Jequirity peas, non-food-grade gelatin powder, and peptones and their derivatives.

(iv) *Excluded persons.* Paragraph (a)(2)(i) of this section does not authorize the exportation or reexportation of food to military or law enforcement purchasers or importers.

Note to § 560.530(a)(2): Consistent with section 906(a)(1) of the Trade Sanctions Reform and Export Enhancement Act of 2000 (22 U.S.C. 7205), each year by the anniversary of its effective date on October 12, 2011,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will determine whether to revoke this general license. Unless revoked, the general license will remain in effect.

(b) *General license for arrangement of exportation or reexportation of covered products subject to the one-year specific license requirement of paragraph (a)(1) of this section.*

(1) With respect to sales pursuant to paragraph (a)(1) of this section, the making of shipping arrangements, cargo inspections, obtaining of insurance, and arrangement of financing (consistent with § 560.532) for the exportation or reexportation of the excluded food items specified in paragraph (a)(2)(iii) of this section, agricultural commodities that do not fall within the definition of *food* set forth in paragraph (a)(2)(ii) of this section, food (as defined in paragraph (a)(2)(ii) of this section) intended for military or law enforcement purchasers or importers, medicine, or medical

13) 2019년 9월20일 (미국 현지시간)부로 인도주의적 식품수출도 미국의 특별공시 전까지 판매금지. KOTRA/전략물자관리원

< 이란 수출 가능품목 >

(ii) 식품의 정의. 영양을 제공하는 목적의 제품으로 인간 또는 동물용 비타민 및 미네랄, 식품 첨가물,보충제 및 병에 든 물과 씨앗으로 받아 소비되는 품목.인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 (단,주류, 담배,껌 또는 비료는 미포함)

***19년 9월20일부로 인도주의적 식품수출도 전면판매금지**

< 이란 수출 불가능품목 >

(iii) 제외된 음식 품목

(a)(2)(i)는 수출 승인 또는 다음 음식의 재수출품목 :

- 피마자 콩, 피마자 콩 씨앗, 날달걀, 수정란 (물고기 이외)새우알, 건란 알부민, 生동물, 목주, 정품 완두콩, 젤라틴 분말 및 펩톤 및 그에 따른 유도체 일체

3-2) 미국 경제제재로 인한 농식품 물류(운송수단별 영향)

가. 물류 운송수단별 제재 여부

1) 항공편

하기의 운송수단별 지정 제재 회피 목록을 포함하여 OFAC(해외재산관리국_Office of Foreign Control Assets)이 관리하는 특별 지정 국가 및 차단된 회사 목록(“SDN 목록“)임을 밝힘

- 미 재무부 제재 대상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 Iran Sanctions List_항공편 상세기종 >¹⁴⁾

항공기종	운송타입	Aircraft Model Number	국가	제재대상
EP-ITE	Aircraft	AircraftManufactureDate27Jul2017 AircraftManufacturer'sSerialNumber(MSN)1424 AircraftModelATR-72 AircraftOperatorIranAir	IRAN	SDN (제재)
EP-ITF	Aircraft	AircraftManufactureDate04Sep2017 AircraftManufacturer'sSerialNumber(MSN)1431 AircraftModelATR-72 AircraftOperatorIranAir AdditionalSanctionsInformationSecondarySanctions	IRAN	SDN (제재)
EP-ITG	Aircraft	AdditionalSanctionsInformation-SubjecttoSecondarySanctions AircraftManufactureDate20Dec2017 AircraftManufacturer'sSerialNumber(MSN)1477 AircraftModelATR-72 AircraftOperatorIranAir	IRAN	SDN (제재)
EP-ITH	Aircraft	AircraftManufactureDate11Dec2017 AircraftManufacturer'sSerialNumber(MSN)1478 AircraftModelATR-72 AircraftOperatorIranAir AdditionalSanctionsInformation SecondarySanctions	IRAN	SDN (제재)

* 출처: OFAC, SDN List System

- OFAC에서 확인된 이란 운송제재 항공편은 현재까지 확인된바로는, 67편으로 목록 13599, 비 SDN이란 제재 법 목록, Part 561 목록, 부문 별 제재 식별 목록 및 비 SDN 팔레스타인 입법위원회 목록에 의거함(정보 변동)

14) OFAC에서 확인된 이란 운송제재 항공편은 현재까지 확인된바로는, 67편으로 목록 13599, 비 SDN이란 제재 법 목록, Part 561 목록, 부문 별 제재 식별 목록 및 비 SDN 팔레스타인 입법위원회 목록에 의거함(정보 변동)

2) 선박편

하기의 운송수단별 제재 목록 검색 응용 프로그램은 해외 지정 제재 회피 목록을 포함하여 OFAC가 관리하는 특별 지정 국가 및 차단된 회사 목록 (“SDN 목록“)임을 밝힘

< Iran Sanctions List_선박편 상세기종 >

선박기종	운송타입	운송타입	국가	제재대상
ARTAVIL	Vessel	MMSI572469210 VesselRegistrationIdentificationIMO9187629 FormerVesselFlagMalta FormerVesselFlagTuvalu FormerVesselFlagNonidentified FormerVesselFlagTanzania AdditionalSanctionsInformation -SubjecttoSecondarySanctions	IRAN	SDN (제재)
ARK	Vessel	MMSI256842000 VesselRegistrationIdentificationIMO9187655 FormerVesselFlagTanzania FormerVesselFlagMalta AdditionalSanctionsInformation -SubjecttoSecondarySanctions	IRAN	SDN (제재)
ARGO I	Vessel	MMSI256843000 VesselRegistrationIdentificationIMO9187667 FormerVesselFlagMalta FormerVesselFlagTanzania FormerVesselFlagTuvalu AdditionalSanctionsInformation -SubjecttoSecondarySanctions	IRAN	SDN (제재)
ARNICA	Vessel	MMSI572467210 VesselRegistrationIdentificationIMO9187643 FormerVesselFlagMalta FormerVesselFlagTanzania FormerVesselFlagTuvalu AdditionalSanctionsInformation -SubjecttoSecondarySanctions	IRAN	SDN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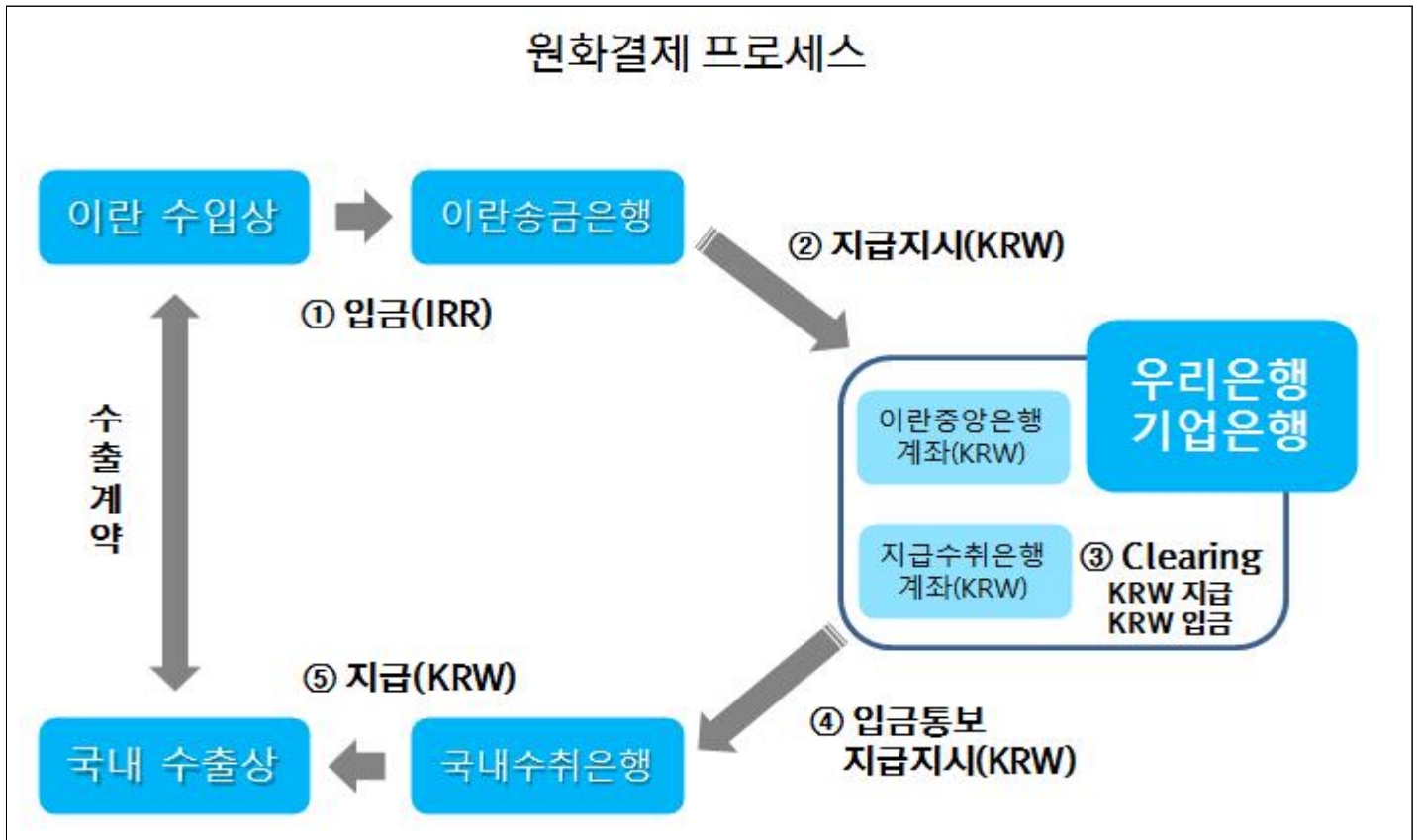
* 출처: OFAC, SDN List System

3-3) 미국 경제제재로 인한 대금 결제 영향

가. 기존 이란 원화결제시스템 작동 프로세스

- 이란과의 수출입 대금결제 통화를 원화로 대체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진행함
 - ' 10.7월 美 통합 이란제재법(CISDA) 발효 이후, 한국과 이란 직접 거래 불가함
 - 이란의 한국 원유수출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 한국 수출대금을 원화로 회수
 - 원화 배정은 이란 중앙은행(CBI)에서 독점
- 정상적인 경상거래 대금에 대하여 보다 안전한 결제루트 확보
- 기존 국내 원화결제 가능은행 : 우리은행, 기업은행(현재 거래중단)

<기존 원화결제 프로세스>



*출처 : 우리은행, 이란 중앙은행(CBI)

< 이란의 수입품목 분류 및 외화 배정 >

구분(품목)	NIMA 시스템	변경전(6.23~8.7)	변경 후(8.7이후)
Group 1(필수품)	이란중앙은행(CBI)이 직접 NIMA* 시스템에 외화 배정	\$1=38,000리알	\$1=42,000리알
Group 2(산업재)	NIMA 시스템을 통해서만 외화 거래 가능	\$1=42,520리알	시중 환율* 적용
Group 3(일반재)		\$1=42,000리알 + 협상액	
Group 4(사치품)	수입불가(1,400개 품목)	수입불가	변동 없음

*출처 : 우리은행, 이란 중앙은행(CBI)

나. 제재 이후 대금 결제 현황

- 이란 중앙은행의 외화 배정 지연에 따른 미수금 발생
- 대이란 수출 미수금 규모는 총 411건, 2,433억 원으로,
이후 돌려받은 미수금은 전체 금액의 6%인 150억 원(61건)에 그침
 - 중소기업의 경우 미수금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 수출계약 완료 건에 대한 미수금 및 아직 보내지 않은 물품도 문제이며,
해당 물품가액이 미수금액 못지않은 상황
-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결제계좌도 폐쇄되어 미수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함

3-4) 非공식적 거래 유의사항

가. 비공식적 거래사례

- 이란항발 관련 공식적 육상, 해상, 항공거래가 봉쇄됨. 이에 따라 非공식적 거래가 공공연히 늘고 있음
 - (A社_자동차부품딜러_소형목선거래) 자동차부품을 수입하여 이란에 팔고 있으며,
1,2단계 제재 대상 품목이지만, 이란 내에서 수요가 상당하여 소형 목선을 통해 교역 진행 중
 - (B社_식품수입유통업체_해상거래) 건강기능식품, 식료품을 이란 해상 혹은 인접국과의 해상경계에서 거래하고 있음
 - (C社_식품수입유통업체_우회항로) 상대적으로 경계가 느슨한 오만 혹은 이라크를 통해 수입 중
 - (D社_식품수입유통업체_우회항로) 중국, 터키와 식품거래시 별도의 SWIFT CODE가 필요하지 않아 거래하고 있음

나. 對이란 비즈니스 유의사항

- '19년 10월 25일, 미국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제재를 다시금 강조하면서 잠재적 테러지원에 연루될 수 있음을 경고함
- 또한, 우회경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거래한다 하더라도 이란 자국 내의 제도 변경이 빈번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기 비공식 거래유형 포함, 어떤 거래도 현 시점에서 이란과 교역은 신중할 필요있음

3-5) 對이란 결제 추후 대응방안

가. 예외국 재인정 시

- 한국의 경우 이란산 원유 수입이 가능해야 수입 대금으로 지불한 원화를 여타 제품의 수출대금으로 받는 원화결제시스템 운용이 가능
- 미국이 예외 없는 수입 금지에서 동맹국 배려로 입장을 선회할 시,
 - 예외 인정시 우리 기업의 미수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짐
 - 단, 예외 인정받는다 해도 제재 품목은 거래 불가, 인도주의적 제품만 일시적 거래가능 할 것으로 예상
 - 추후 일시적으로 예외국 인정 시를 대비해, 이란 중앙은행과 협조하여 대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국내수취은행은(우리은행,기업은행)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
- 결제 관련 명확한 지침 필요
 - 추후 품목교역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기업 입장에서는 추후 재개가능성을 염두하고 비즈니스 행사 및 개별출장을 통해 바이어와의 지속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필요

제 4 장 이란 제재 기간 주요 농식품 수요 트렌드

4-1) 프로바이오틱스 (HS-CODE : 2106.90.90)

가. 시장 트렌드

소비 트렌드

- 경제제재 중이나 식품 소비량 급증 예상
 - 이란은 약 8억 명에 달하는 인구수를 보유한 식품 시장
 - 한류 드라마 및 친선 행사를 통해 한국 식품이 전파되었으며, 건강한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제품 트렌드

- Minwoo의 프로바이오틱스 비스킷 제품 인기
 - 이란 소비자들의 약 90%가 아직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우수성을 인식하지 못함
 - 이란에는 현재 10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은 Minwoo J Biscuit 제품임
 - 정제된 캡슐 혹은 알약 타입 형태의 제품 인기

정책 트렌드

- 이란 식품학회, 프로바이오틱스의 우수성 제고 노력
 - 프로바이오틱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중

4-1-1) 소비트렌드

○ 경제제재 중임에도 식품 소비량 급증 예상

- 이란의 식품 소비량은 향후 몇 년 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해당 전망에 대한 첫 번째 요인은 8억 명에 달하는 인구수를 보유했다는 점임
- 두 번째 요인은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으로, 향후 도시 식료품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란 식품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연 평균 2.5%씩 성장할 것이며, 2020년에는 67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이전 이란의 경제제재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감소와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고기, 치즈, 유제품과 같은 제품의 소비량이 감소함
- 그러나 개방 후 경제 성장에 따라 해당 제품을 포함한 가공식품 분야가 성장한 것으로 미루어 다음 제재완화 이후에 식품에 대한 소비량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현재는 기존 식료품 소비 채널의 80%를 차지했던 전통적인 상점이 밀려나고 하이퍼 마켓 및 슈퍼마켓이 등장함에 따라 고급 제품 및 다양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함

4-1-2) 소비트렌드

○ Minwoo의 프로바이오틱스 비스킷 제품 인기

- 이란 프로바이오틱스 및 기능성 식품학회(ISPFF, Iranian Society of Probiotics and Functional Foods)의 설립자인 Maryam Tajabadi에 의하면 이란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친숙하지 않으며 이란 소비자들의 약 90%가 아직까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우수성을 알지 못함¹⁵⁾
- 그러나 Mahmoud Hojjati 농림부 장관은 현재 이란의 유제품 수출이 상승세에 있으며 수출 대상국들의 선호 제품이 주로 이란의 프로바이오틱스와 저유당 제품이기 때문에 이란 현지 시장도 해당 트렌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 대기업 Minwoo Company가 제조한 Javaneh Biscuit 제품은 이란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임. 2019년 8월 기준 이란에서는 점차 다양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요구르트를 비롯해 약 10종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현재 시판 중임

M社 J Biscuit 제품



제품명	Probiotic Biscuit
상표명	Javaneh
포장	Elophane 소재 플라스틱
순중량	200g (355mm X 265mm X 135mm)
제조업체	Minoo Sharq Co.
유통기한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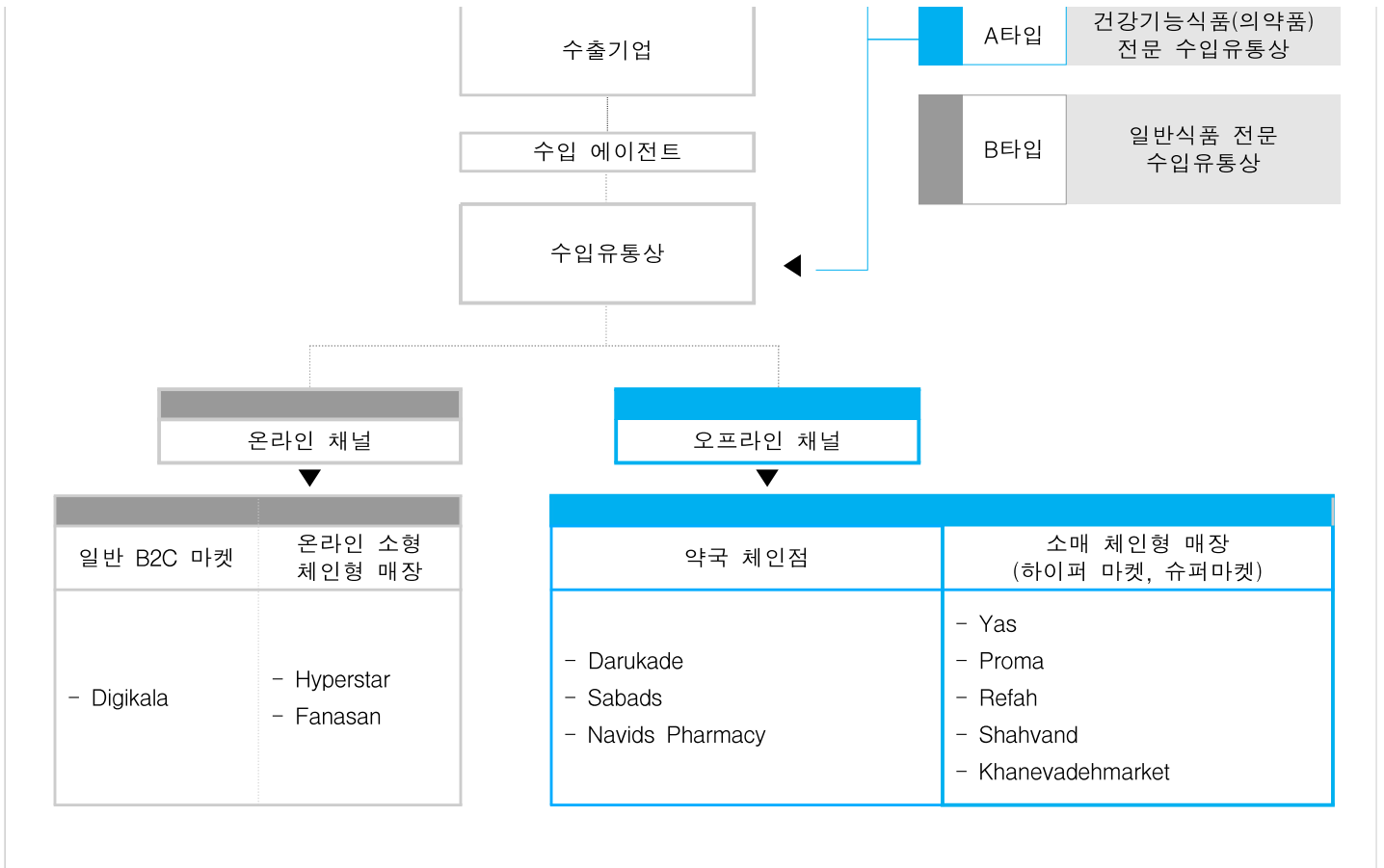
*출처 : Minwoo(www.minoogroup.com)

15) Financial Tribune, 'Probiotics Hold Promise for Health, Food Market'

4-1-3) 정책트렌드

- 이란 식품학회, 프로바이오틱스의 우수성 제고 노력
 - 이란의 프로바이오틱스 및 기능성 식품학회(ISPFF)는 기능성 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창립됨. 본 학회는 산하에 8개의 전문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여러 학술 자료와 논문을 발간하는 중임. 또한 회원 모집을 위해 식품 제조업체와 학생, 연구위원 등을 유치하며 「Probiotics and Culture Preservation」,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on Probiotics and Prebiotics」 등의 관련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개최함
 - 아직까지 한국 식품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이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참관하거나 정기 간행물에 제품을 기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프로바이오틱스 및 기능성 식품학회(ISPFF)와의 네트워크가 단기적인 수출 실적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질을 인정받거나 현지 이란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나. 프로바이오틱스 유통구조



유통구조	특징
일반 B2C 마켓	일반 B2C 마켓은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전자제품, 가전제품 및 의류와 가구를 취급하고 있음
온라인 소형 체인형 매장	소형 체인형 매장 매장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배송을 해주는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소매 체인형 매장	이란의 소매시장이 현대화 됨에 따라 생겨난 매장으로 한국의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을 아우르는 형태의 매장이며, 테헤란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위치함
약국 체인점	2018년 Be The First In Iran社의 조사에 따르면, 이란은 1인당 의약품 소비량이 아시아 2위, 전 세계 20위에 오를 정도로 약에 대한 소비가 높으며, 1만 개 정도의 약국이 이란 전역에 존재함. 또한 현재 이란 보건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의약품 및 건강제품은 약국으로 유통을 제한하고 있음
소매 체인형 매장 (하이퍼 마켓, 슈퍼마켓)	하이퍼마켓보다는 전통 재래시장과 개인 소매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대도시를 제외한 경우 재래시장 및 개인 소매업체의 점유율이 매우 높음

다. 프로바이오틱스 경쟁제품

방문매장

TakPasdaran pharmacy	Dr. Ajvadi Pharmacy	Dr. Noorbakhsh Pharmacy
		
Pasdaran, W Gilan St, Tehran,Iran	-	-
Navid Pharmacy	Dr. Pedram Rahiminik Pharmacy	Dr. Yaser Bagheri Pharmacy
		
District 13, Piroozi street, Tehran, Iran	Chizar, Andarzgoo blvd, Azadi street, Tehran, Iran	Dezashib, Farmaniyeh avenue, Tehran, Iran

* 출처 : TakPasdaran pharmacy, Dr. Ajvadi Pharmacy, Dr. Noorbakhsh Pharmacy, Navid Pharmacy, Dr. Pedram Rahiminik Pharmacy, Dr. Yaser Bagheri Pharmacy, 11개 제품 기준

번호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가
1	Protect	Protexin	영국
2	Restore	Protexin	영국
3	Balance	Protexin	영국
4	Lactol	Nature only	미국
5	Mutaflor	Mutaflor	독일
6	KidiLact	Zist Takhmir	이란
7	Daily Yeast	Zist Takhmir	이란
8	LactoFem	Zist Takhmir	이란
9	LactoCare	Zist Takhmir	이란
10	VitaLact	Zist Takhmir	이란
11	FamiLact	Zist Takhmir	이란

* 출처 : TakPasdaran pharmacy, Dr. Ajvadi Pharmacy, Dr. Noorbakhsh Pharmacy, Navid Pharmacy, Dr. Pedram Rahiminik Pharmacy, Dr. Yaser Bagheri Pharmacy, 11개 제품 기준

매장 조사를 통한 경쟁제품 11개 선정

○ 이란 내 유통 중인 프로바이오틱스

- 캡슐 및 정제 개수 당 평균 가격 360원¹⁶⁾

현지조사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모두 캡슐 및 정제(알약) 형태인 것으로 조사됨
 더욱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해 중량 대신 캡슐 및 정제 개수 당 가격을 분석함
 이란 내 판매가 확인된 경쟁제품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개당 전체 평균가격은 36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최고가는 853원, 최저가는 181원으로 확인됨

- 캡슐 개수 및 유통기한

경쟁 제품의 평균 캡슐 개수는 32.5개이며 최대 60개, 최소 15개로 확인됨

유통기한은 평균 24개월로 현지에서 조사된 11가지 제품 모두 24개월의 유통기한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됨

16) 1원(KRW) = 0.035리알(IRR) (KEB 하나은행 고시 기준)

라.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가 인터뷰

<p>Q1. 이란 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수요는 높은가?</p>
<p>“현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이란시장에서 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식품 수입 유통업체 Aseman Darou Pars 담당자 Mrs. Hosseini와의 인터뷰 中, 2019.08</p>
<p>“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여 매우 높은 편이므로 관련 제품 들의 시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식품 수입 유통업체 Arman Daroo Noor Gostar 담당자 Mr. Rezaei와의 인터뷰 中, 2019.09</p>
<p>Q2.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취급형태는 어떠한가?</p>
<p>“현재 우리는 알약형, 분말형, 액체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유통하고 있다.” -식품 수입 유통업체 Arman Daroo Noor Gostar 담당자 Mr. Rezaei와의 인터뷰 中, 2019.09</p>
<p>“액체형과 태블릿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유통하고있다.” -식품 수입 유통업체 EXIR 담당자와 의 인터뷰 中, 2019.09</p>
<p>“인증 획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액체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식품 수입 유통업체 Rossen Darman 담당자 Mr. Ahmad과의 인터뷰 中, 2019.09</p>
<p>“인증 수취가 가장 간단한 액체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주로 수입 및 유통한다.” -식품 수입 유통업체 Samin Pharma 담당자 Mr. Mosavi와의 인터뷰 中, 2019.09</p>
<p>Q3.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한 구매요인은 무엇인가?</p>
<p>“이란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매요소는 품질 및 생산국이라고 볼 수 있다.” -식품 수입 유통업체 Aseman Darou Pars 담당자 Mrs. Hosseini와의 인터뷰 中, 2019.09</p>
<p>“이란 소비자들은 품질과 생산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식품 수입 유통업체 EXIR 담당자와 의 인터뷰 中, 2019.09</p>

4-2) 조미김 (HS-CODE : 1212.21)

가. 시장 트렌드

소비 트렌드

“ 김밥용 김 제품 확인 가능 ”

- 이란 현지방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김밥용 김 제품임을 확인
- 한국산 조미김 제품 아직 유통 점유율 낮아

제품 트렌드

“ 중국산 · 일본산 제품 유통 중 ”

이란 내 유통 중인 김 제품의 원산지 확인 결과 중국산 혹은 일본산으로 분석됨

정책 트렌드

“ 이란 정부, 수입관리 품질관리가 주목표 ”

이란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제품은 이란의 보건부에 샘플을 송부하여 미리 검사를 받아 표준 규격 심사를 거쳐야함

“ 할랄 인증, 유리 ”

무슬림 국가인 이란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육류제품에 한해 할랄 인증은 필수임

할랄인증기관은 그 수가 매우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란에서 인정해주는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음

4-2-1) 소비트렌드

○ 이란 내, 김밥용 김 제품 확인

- 이란 내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적인 대형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에서는 김 제품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현대적인 유통매장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Behjat Abad라는 재래시장으로 확대함
- 재래시장 내에 유통되고 있는 김 제품을 확인해본 결과, 모든 김 제품은 조미김이 아닌 김밥용(스시 김)으로 나타남
- 또한 현지 바이어 인터뷰 결과, 이란 소비자들 사이에서 조미김의 인지도가 낮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김밥 용(스시 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전함

4-2-2) 제품트렌드

○ 중국산·일본산 제품 다수 유통 중

- 현지방문조사 결과, 이란 내에 유통 중인 제품의 원산지는 대부분 일본산과 중국산으로 확인됨. 일부 제품의 경우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일본에 소재하는 본사의 중국 지사인 경우도 있음

이란 내 유통 중인 김 제품

SANYUAN Foods Industry		TAKAOKAYA Food Co17)	
가격	130,000리알 / 30g	가격	650,000리알 / 125g
원산지	중국	원산지	중국
Urashima Nori Co. Ltd		KINBARA	
가격	870,500리알 / 100g	가격	210,000리알 / 30g
원산지	일본	원산지	일본

*출처 : 현지방문조사(Velenjak Super, Gole Sang, Belgua Market, Behjat Abad Baza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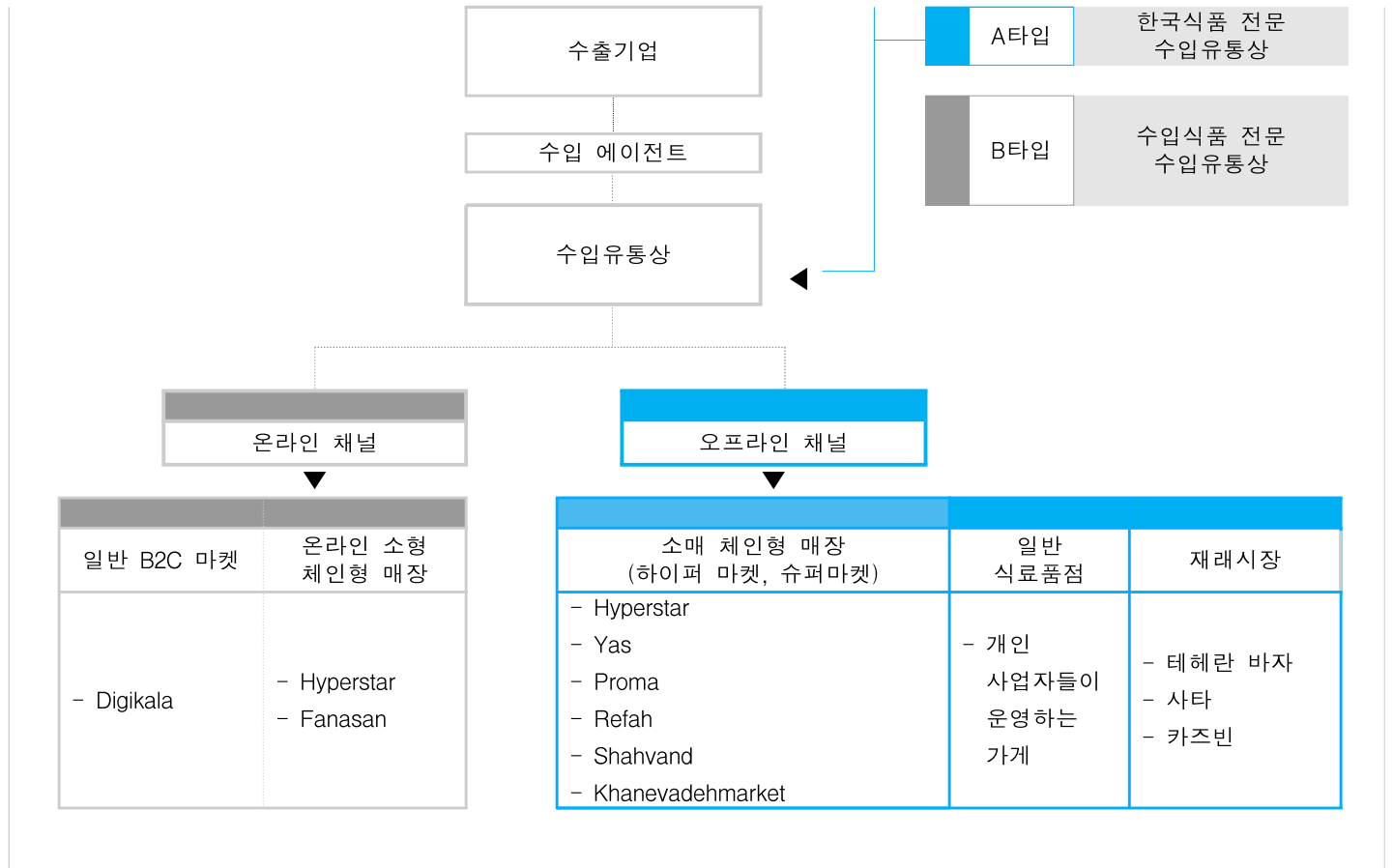
17) 해당 제품의 경우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본사는 일본에 소재한 것으로 분석됨

4-2-3) 정책트렌드

○ 이란 정부, 수입제품 품질관리가 주목표

- 이란은 제품 수입 시, 수입절차의 첫 단계인 수입허가 취득 전에 제품의 품질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의 인증서를 받거나 사전에 이란에 샘플을 보내 표준산업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식품의 경우에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Medical Education)의 허가가 필요함
담당 부서는 Food and Drug Department의 Import section임
- 선적에 앞서 샘플을 보건부에 전달한 후 승인을 받고 표준규격 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위생 관련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이 수입이 허가됨. 보건부의 허가를 위해서는 FDA 등의 인증서가 필요함









나. 조미김 유통구조



유통구조	특징
일반 B2C 마켓	일반 B2C 마켓은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전자제품, 가전제품 및 의류와 가구를 취급하고 있음
온라인 소형 체인형 매장	소형 체인형 매장 매장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배송을 해주는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소매 체인형 매장	이란의 소매시장이 현대화 됨에 따라 생겨난 매장으로 한국의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을 아우르는 형태의 매장이며, 테헤란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위치함
일반 식료품점	식료품을 취급하는 작은 상점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며 한 체인이 1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재래시장	지붕이 있는 건물 안에 위치하며 한국의 쇼핑몰과 같은 형태를 지닌 매장 ¹⁸⁾ 도 있음. 점차적으로 현대적인 소매시장이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으나 아직 재래시장에 대한 수요도 존재함

18) 테헤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쇼핑몰과 더 비슷한 형태로, 건물 내에 휴식 공간이 있으며, 단순히 장을 보는 공간이 아닌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인 것으로 나타남

다. 조미김 경쟁제품

방문매장			
Velenjak Super		Gole Sang	
			
Bahar Alley ,shahid behzadi Blvd , Asef street , Tajrish., Tehran , Iran		N 314 , Niavaran (Bahonar) , district 1 , Tehran , Iran	
Belgua Market		Behjat Abad Bazaar	
			
Marjan street , Bukan street , Yaser three - way intersection , Niavaran , Tehran , Iran		Aban street , Karimkhanezand , Tehran , Iran	

* 출처 : Velenjak Super,Gole Sang,Belgua Market,Behjat Abad Bazaar, 경쟁제품 5개

매장 조사를 통한 경쟁제품 5개 선정

번호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가
1	樂惠(Rofeel)	SANYUAN Foods Industry	중국
2	YAKISUSHINORI	TAKAOKAYA Food Co	중국
3	Sushi Nori toasted seaweed	Urashima Nori Co. Ltd	일본
4	やきのり(Yakinori)	KINBARA	일본
5	Meinong 돌김	美濃 (mei nong)	중국

* 출처 : Velenjak Super,Gole Sang,Belgua Market,Behjat Abad Bazaar, 경쟁제품 5개

○ 이란 내 유통 중인 조미김

-이란 내 유통되는 김,

10g당 가격 평균 72,976.67리알¹⁹⁾

경쟁 제품들의 평균 용량은 60.2g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용량을 나타낸 제품은 TAKAOKAYA社의 YAKISUSHINORI 제품으로 125g이며, 가장 작은 용량을 나타낸 제품은 美濃 (mei nong)의 돌김으로 16g으로 분석됨

경쟁 제품의 5개의 가격비교를 위해 10g당 평균가격을 도출해본 결과 평균 가격은 72,976.66리알로 나타남. 美濃 (mei nong)의 돌김 제품이 10g당 112,500리알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분석됨

19) 1리알 = 0.0364원, 1원 = 27.4507리알 (KEB하나은행 고시기준)

라. 조미김 전문가 인터뷰

Q1.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무엇인가?

“현재 건조해산물과 건조식품을 취급하고 있음”

Pishro-tejarat.ir
Manager Mr. Soheil Bolandpari와의 인터뷰 中, 2019.09

Q2. 이란 내 조미김에 대한 인지도는 어떠한가?

“김은 스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스시는 일부 고급식당에서만 판매하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다. 일반 사람들은 김에 대한 인지도가 서서히 늘고 있다고 생각한다.”

Pishro-tejarat.ir
Manager Mr. Soheil Bolandpari와의 인터뷰 中, 2019.09

“이란의 소비자들이 최근 해산물을 즐겨 먹는 추세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im-co
Manager Dr. Jafari와의 인터뷰 中, 2019.09

Q3. 한국산 조미김의 추천 유통경로는 무엇인가?

“스시를 취급하는 고급식당이나 외국인 이민자들이 많은 인접국가인 UAE를 통해 진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Pishro-tejarat.ir
Manager Mr. Soheil Bolandpari와의 인터뷰 中, 2019.09

“고급식당이나 특이한 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소매점으로 유통하는 것을 추천한다.”

Pim-co
Manager Dr. Jafari와의 인터뷰 中, 2019.09

제 5 장 이란 수입업체 인터뷰 내역

No.	바이어명	e-mail	sales@abadisarka.com
1	Abadis Tejarat Arka	바이어유형	수입유통
		취급품목	가공식품 및 식자재, 소스류
		수입국가 (거래국)	중국
		<p>○ 상세 내용</p> <p>Q.1 현재 다른 국가로부터 식품류를 수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국가에서 수입하고 계시며, 해당 국가에서 수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 현재 해외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최근 가장 거래가 많은 국가는 중국임 중국에서 식자재류를 수입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고, 지불 방식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래 중에 있음</p> <p>Q.2 이란 내 반입 및 수입이 허가/금지된 품목에는 각각 어떠한 품목들이 있습니까?</p> <p>- 수입이 상시 금지되어있는 품목은 없으나 정세에 따라 월 단위로 금지 품목이 변동되고 있음</p> <p>Q.3 인도적 물품의 반입은 상시 허가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입니까?</p> <p>구체적으로 어떠한 품목들이 상시 허가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까? 해당 품목 중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있습니까?</p> <p>- 인도적 물품(생수, 의약품)은 수입 금지 대상이 아님 - 해당 품목들은 지불 방식과 관련한 사유로 보통 터키나 아랍에미리트,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음</p> <p>Q.4 한국 식품류를 수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p> <p>있다면 어떤 품목을, 어떠한 경로로 수입하고 계십니까?</p> <p>- 한국 제품이나 한국 업체와 거래해 본 경험이 없으나, 이란 내에 한국산 식자재를 취급하는 업체도 있음</p> <p>Q.5 무역대금 결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p> <p>- 터키, 아랍에미리트,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제 3의 교환은행을 끼고 거래해야 함²⁰⁾. 미국의 대-이란 달러화 제재로 인하여 달러화 직결제가 불가한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SWIFT Code 거래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무역 거래에 어려움이 있음</p>	

20) A社의 대금결제유형으로 공식적인 사실과 무관함

No.			담당자/ e-mail	Mr. Hootan (CEO) /info@daryantrading.com
2	바이어명	Daryan Terajat Trading Co.	바이어유형	수입유통 및 제조
			취급품목	기능성식품류 및 의약품
			수입국가 (거래국)	중국
인터뷰 내역	<p>○ 상세 내용</p> <p>Q.1 현재 다른 국가로부터 식품류를 수입하고 계십니까?</p> <p>그렇다면 어떤 국가에서 수입하고 계시며, 해당 국가에서 수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 현재 다양한 해외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은 멀티비타민 등 기능성 식품류와 의약품임. 과거에는 해외로부터 완제품 수입도 해왔으나, 이란 정부의 중소기업/제조업 진흥 정책으로 인하여 2년 전부터는 이란에 생산 공장을 두고 직접 생산을 하고 있음</p> <p>원재료 수입은 주로 중국에서 하고 있으며, 일부는 홍콩, 대만, 미국에서도 수입을 하고 있음. 원재료 수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란 정부의 해당 제품 허가 및 인증 여부이며, 원산 국가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음. 배송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든 이란으로 직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음</p> <p>만약 한국과 거래를 하게 된다면 대금 결제가 문제가 되겠지만(터키, 아랍에미리트, 중국이 아닌 경우 직결제가 어려움), 본 기업은 홍콩과 대만에 파트너사를 두고 있어, 해당 파트너사가 대금 결제 대행 등을 지원해 줄 것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임</p> <p>Q.2 이란 내 반입 및 수입이 허가/금지된 품목에는 각각 어떠한 품목들이 있습니까?</p> <p>- 현재 원재료의 수입과 관련해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등은 미비한 상태이나, 의약품 원재료의 경우 유럽 연합의 FDA 인증서 혹은 미국의 FDA 인증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음. 해당 인증서는 수입 신고 및 등록 시 필수 서류로, 수입 신고 및 등록신청 후 정부의 심사를 통해 제품의 수입이 허가됨</p> <p>Q.3 인도적 물품의 반입은 상시 허가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입니까?</p> <p>구체적으로 어떠한 품목들이 상시 허가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까?</p> <p>해당 품목 중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있습니까?</p> <p>- 인도적 물품은 물론이고, 산업용 원자재, 원재료 품목도 수입이 허가되고 있음 (심지어 미국산 원재료도 허가가 가능함). 유일한 문제는 대금 결제이며, 파트너사 등을 통한 우회 결제로써를 보유한 기업에게는 문제되지 않음</p> <p>Q.4 한국 식품류를 수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품목을, 어떠한 경로로 수입하고 계십니까?</p> <p>- 한국산 제품을 취급한 경험이 없으나,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한국산 식품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할 용의 있음</p> <p>Q.5 무역대금 결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p> <p>- 홍콩, 대만,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파트너사를 통해 무역대금 결제를 진행 중</p>			

No.	바이어명	Ehyaye Jaddeh Abrisham Company	담당자/ e-mail	매니저
			바이어유형	수입유통
3			취급품목	가공식품 및 식자재, 소스류
			수입국가 (거래국)	말레이시아, 독일, 네덜란드
인터뷰 내역		<p>○ 상세 내용</p> <p>Q.1 무역 거래 및 물품 수취 시 어떤 항구를 이용하고 계십니까?</p> <p>- 해외 업체와 거래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국가의 항구를 거쳐서 물품을 반입하거나 이란 국경 근처 해역에서 거래하는 방법을 이용함</p> <p>Q.2 어떤 식품/식자재(구체적인 품목) 수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p> <p>-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관심이 있음</p>		

No.			담당자/ e-mail	매니저
4	바이어명	Daryan Terajat Trading Co. (w.ILIA Corporation.)	바이어유형	수입유통
			취급품목	Nutritional supplements Food raw materials Skin product Natural mediens
			수입국가 (거래국)	유럽,중국,한국(이전)
인터뷰 내역	<p>○ 상세 내용</p> <p>Q.1 현재 다른 국가로부터 식품류를 수입하고 계십니까?</p> <p>- 유럽,중국 등 식품원료,영양보조제 등을 수입하고 있음.한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D社와의 일부 문제로 인해 제재 전에 한국 회사로부터 수입을 중단함</p> <p>Q.2 이란 내 반입 및 수입이 허가/금지된 품목에는 각각 어떠한 품목들이 있습니까?</p> <p>- 금지 제품 목록에 대해서는 목록이 계속 변경되고 금지 제품으로 등록된 일부 제품도 여전히 수입이 허용 될 수 있으며, 모든 것은 수입 허가 등록시 이란 정부와의 협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함</p> <p>Q.3 인도적 물품의 반입은 상시 허가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입니까?</p> <p>구체적으로 어떠한 품목들이 상시 허가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까?</p> <p>해당 품목 중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있습니까?</p> <p>- 인도주의 제품의 경우 가장 많이 수입되는 제품은 보조제 또는 종합 비타민 제품이고, 의약품도 많이 들어오고 있음</p> <p>- 실제 의약품 (인도주의 제품으로 분류)의 원료는 현재 한국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있지만 해당 한국 고객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 할 수 없음</p> <p>Q.4 한국 식품류를 수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품목을, 어떠한 경로로 수입하고 계십니까?</p> <p>-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한국 기업들이 현재도 이란으로 식품을 수출한 사례를 알고 있음. 쉽지는 않지만 확실히 가능하며 이미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음</p> <p>- 중국의 경우,이란은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이란의 회사들은 대부분 중국과의 거래가 훨씬 수월하기에 선호하고 있음</p> <p>Q.5 무역대금 결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p> <p>- 인도,중국 그리고 소수의 유럽회사로부터 거래를 진행함.더 이상 언급 어려움</p>			